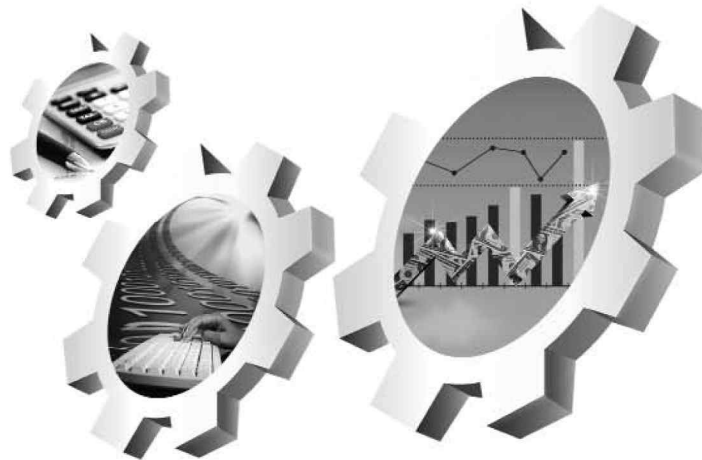


2014
Viet Nam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머리말

국세청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현지 국가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최근 동향 및 세법 개정내용 등을 반영한 이탈리아에 대한 세무안내서와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중국, 베트남, 러시아, 호주, 폴란드에 대한 세무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안내서에 수록된 정보를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좀 더 유익한 세무안내서 발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12월

국제조세관리관 서진욱



I. 베트남 최신 세무동향	1
1. 베트남 진출확대와 세무이슈 증가	2
2. 베트남 조세정책의 변화	5
3. 이전가격 조사 동향	7
4. 주요 연구방향	8
II. 베트남 핵심 세무	9
제 1 장 이전가격세제	10
1. 이전가격 관련규정	10
2. 베트남 이전가격세제 심층연구	11
3. 이전가격 과세 대응방안	38
4.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40
5. 상호 합의(MAP)	57
제 2 장 외국인계약자 세제	60
1. 관련규정 및 조세조약과의 관계	60
2. 외국인계약자 세제 적용대상	62
3. 외국인계약자세제 산출방법	68
4. 외국인계약자세제 유의사항	75
제 3 장 세목별 조세제도	78
1. 법인세	78
2. 부가가치세	84



3. 개인소득세	90
4. 환경보호세('12.1.1)시행	96
5. 특별소비세(SST)	98
6. 기타세	99
Ⅲ. 투자 관련 참고자료	101
1.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규정	102
2. 2014년 신 (新)투자법 개정	103
Ⅳ. 부록	105
1. 베트남 개황	106
2. 이전가격 보고서식	122
3. 베트남 주요 웹사이트	125
4. 참고문헌(웹사이트)	128



I

베트남 최신 세무동향



1. 베트남 진출확대와
세무이슈 증가
2. 베트남 조세정책의 변화
3. 이전가격 조사 동향
4. 주요 연구방향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1

베트남 진출확대와 세무이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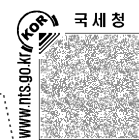


□ 탈(脫) 중국화의 가장 확실한 대안

- 최근 외투기업들의 기술유출, 임금상승 등 투자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중국을 대신해 새로운 생산거점이자 수출기지로 베트남을 주목하고 있고 파격적인 외국인 투자정책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진출확대
※ 해외신흥시장 우선대상국 설문 아시아중동지역 1위(전경련)
- '15년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관세장벽 철폐로 타(他) 동남아 국가와 차별화되는 각종 조세혜택 제공을 통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와 함께, 세입감소로 인한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적극적 세수확대 정책을 동시에 추진

□ 우리나라, 베트남 최대 투자국으로 급부상

- '13년 연간 우리나라는 베트남 내 최대 투자국이며, '14년 1분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2.9%증가한 7억 6056만 달러투자로 베트남 진출 러쉬 지속
- '13년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교역규모는 약 283억달러로 제6대 수출대상국으로 '10년 100억달러 돌파 후 급격한 성장세
 - 특히 동 기간 일본, 인도, 홍콩 등 10대 주요수출국에 대한 수출현황이 감소·정체된 것과 비교하여 베트남 수출은 32.3%로 급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국별 수출 현황(상위 5개국)>

(천달러, %)			
국 가	2012년	2013년	증 가 율
베 트 남	15,954,975	21,087,582	32.2
중 국	134,331,099	145,869,498	8.6
미 국	58,523,678	62,052,488	6.0
일 본	38,850,174	34,662,290	-10.7
홍 콩	32,609,163	27,756,308	-14.9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진출기업의 주요 세무상 애로사항

- 이전가격세제 시행규칙 시행과 본격적인 과세
 - 시행규칙 정비와 함께 이전가격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진출기업의 최대 세무RISK임
 - 현지 진출한 대부분 우리기업은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이해부족과 함께 베트남 현지기업을 저임금을 활용한 단순한 현지 생산처로 인식, 이익을 남기지 않는 구조로 운영해왔으며 베트남 과세당국에서 요청하는 수준의 이전가격보고서 및 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세당국의 일방적 과세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이전가격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근거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일방적인 과세로 이어지고 있음
- 외국인계약세제의 무분별한 적용으로 인한 이중고
 - 조세조약 상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과세권이 있으나 베트남 과세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외국인계약세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동 금액에 대하여 한국 국세청에서도 “정당한 납부”세금으로 보고있지 않아 이중과세 조정이 불가능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재화의 공급시 보증 조건만 포함한 경우는 외국인 계약자세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계약서 내 다른 서비스의 조건이 포함되어서는 안됨 (조립·유지·검사·보증 등의 공급을 수반한 재화의 공급은 외국인 계약자세를 적용받으며, 이 경우 계약서상 이들 서비스의 공급가액 표시 유무를 떠나 유상, 무상 모두에게 적용)
- 현지 노동법 준수 어려움
 - 베트남 노동법 상 초과근무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여 야간 작업에 대한 임금 지급시 공식적 지급이 힘들어 현지 손금인정어려워 회계 및 세무 처리가 까다로움
- 현지진출 중소기업의 혜택미비
 - 우리 일부기업의 거액투자에 대하여는 특별 세제조항을 통해 파격적 혜택을 받은 반면 일반적 투자 확대 우대세율 적용시 투자규모, 매출액, 고용규모와 같은 조건을 두어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혜택 미비**(투자 확대 기준 3억 달러 이상)
- 공무원의 부정부패
 -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지수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은 전체 183개 평가국 중 112위를 기록, ASEAN국가중 최하를 기록하는 등 베트남의 부정부패는 **반 경쟁적인 비즈니스 관행** 및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시키는 행정절차 등 심각한 문제
 - 현지 업무별 일정률의 비공식적비용이 일반화되어있음
- 주재원 과세 이슈
 - 베트남 소득세 시행규칙(Circular 111/2013-TT-BTC)에 따르면, 베트남 거주자의 요건을 미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상기 18조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해진 **요율(20%)**에 따라 세금을 베트남에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사로부터의 장기 출장자 파견, 서비스가 수반된 재화(설치, 시운전, 교육훈련 등 인적 용역수행이 명시된 기계설비) 수입의 경우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판단 과세하고 있음



-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를 판정해야하나 현지법에 따라 거주자를 판정하여 현지소득세를 추징당하고 있는 실정임
- 대규모 투자에만 감면혜택
 -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기준으로 200억 동이상 신규 투자를 하거나 감세 조치가 적용되는 사업 부문에만 투자 확대를 시행
 - 취득 원가 기준 고정자산 증가율이 20% 이상 증가 하거나 생산량 기준 20% 이상 증가 시 인정하는 등 신규투자요건 복잡

2 베트남 조세정책의 변화

- 『2011-2020 조세개혁정책』
 - 2011년 1월 11차 전당대회를 통해 2020년까지 ‘현대화된 산업국가’ 건설을 비전으로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2011-2012)을 채택하였으며 관련 제원확보와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적극적 세수확대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
- 【2012-2015 이전가격 관리계획】
 - (EU¹⁾ PROJECT) 베트남정부는 '12~'13동안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과세규정의 도입, 이전가격 과세기법의 습득을 골자로한 ‘EU PROJECT’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본격적인 과세가 이루어 지고 있음

1) 벤치마킹 반식으로 EU와 OECD, 세계은행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이전가격전문가 양성 및 세계개편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이전가격 과세강화 ACTION PLAN) 베트남정부는 '12년 2월 '외국투자 기업 이전가격관리 관계부처 회의'의 후속조치로 『Decision 1250/QD-BTC_이전가격 관리계획』을 발표하였으며 5대 액션플랜을 제시
 - 『2011-2020 조세개혁』과 맞물려 주요 세수확보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세무조사의 20%를 이전가격 조사로 실시하고 자체적인 이전가격 고 위험군에 대한 자료축적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안내 등을 지속할 계획으로 베트남 세무행정의 핫 이슈로 떠오름

□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 도입('14.2.5 발효)

- APA의 개요, 운영절차, 상호책임, 협상, 실행의 기본지침을 제공하는 Circular201이 발효됨
 - 상호합의(MAP)제도와 함께 심층연구 필요

□ 조세회피방지규정 도입('13.12.24 공포)

- (Circular NO.205/2013/TT-BTC, 2013.12.24)조세조약의 혜택만을 목적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한 경우 '계약의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일명 'GAAR'²⁾)이 도입(명문화)되어
 - 우리기업이 홍콩 등을 통해 우회진출하는 경우 적용될 소지가 크며 본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에 대한 업계의 불안감확산

2) GAAR : General Anti-Avoidance Rules(조세회피방지규정)



3

이전가격 조사 동향

□ 2013년 이전가격조사

- 베트남 23개 시와 지방세무관서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 대부분을 이전가격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 '13년 4분기부터 단기간동안 약 50여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약 40%(20여개 업체)가 한국기업인 것으로 파악됨
 - * 단순 임가공공장인 A사는 통상마진(3%)의 6배(18%)를 추징당함
- 베트남 국세청(GDT) 대납세국 및 각 성(城) 세무서에 이전가격조사팀이 주도하며, ① 매출액, 자본금은 확대되면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중이고, ② 90%이상이 특수관계자 거래이며, ③ 이전가격보고서가 미비(손실누적 소명부족)하였다는 공통점
- 주요 조사업종 : 섬유, 의류, 부동산, 건설, 철강, 수출기업
- 주요 조사거래 : 상품매매, 용역, 금융비용, 고정자산
- 과세당국이 보유 중인 내부자료를 이용한 정상가격율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10%이상의 고액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진출 기업의 대비 필요
- '13년 2,110업체를 조사하여 약 190만\$을 추징하였으며, 이에 부가하여 가산세(penalty) 약 47만\$을 추징
 - '12년 이전가격과세와 비교하여 56% 증가된 수치
 - 100~300%의 가산세를 조사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으로 부과



□ 이전가격조작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주도

- (“Shame campaign”) 베트남과세당국은 이전가격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이른바 이전가격을 “세금회피”로 인식하게 하는 캠페인을 지속(보호주의 경향)
- 국제조세이론 상 이전가격세제는 실현소득과 무관한 국가 간 세무상 소득 조정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 합리적 주장을 할 수 있으나, 베트남의 일방적 여론주도로 외국기업의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불복과 조정이 어려움

4

주요 연구방향



□ 현지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연구

- 기존의 해외세정연구에서 진일보하여, 유관기관을 통한 자료수집이 용이한 일반현황 및 세정연구와 직접적인 없는 투자법관련분야는 참고내용으로 수록(참고부분)
 - ※ 본 세정보고서 한권으로 세정을 중심으로 베트남 진출준비 끝
- 최근 베트남과세당국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이전가격세제(APA, MAP)와 대응방안, 외국인계약세제에 대하여 개별 법조항 사례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제공
 - ※ 우리나라 세법과 비교분석

□ 2014년 최신 개정세법 정리

- 2014년 주요개정부분을 각 세목연구에 별도 기재수록



II

베트남 핵심 세무



- 제 1 장 이전가격세제
- 제 2 장 외국인계약자 세제
- 제 3 장 세목별 조세제도



제 1 장 이전가격세제

1 이전가격 관련규정



□ 베트남 이전가격세제 연혁

- 정상가격원칙(The arm's length principle)에 관한 법령
 - Circular 74/TC-TCT(1997.10.20.), Circular 89/1999/TT-BCT(1999.7.16.), Circular 13/2001/TT-BCT(2001.3.8.) 등 외국인투자법률에 시장가격의 적용에 대해 규정
 - '04년 발효된 베트남 기업소득세법(BIT)에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은 시장가격에 따라야한다는 원칙이 포함
 - '06년부터 발효된 Circular 117/2005/TT-BTC에 정상가격계산의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관련 서식을 규정
 - '10년 기존의 규정을 강화하고 이전가격의 국제적기준을 반영(OECD 가이드라인)한 Circular NO66/2010/TT-BTC를 제정, 기존의 Circular 117을 대체하였으며 본격적인 과세가 이루어짐
 - 『2012-2015』 이전가격관리계획(Decision No. 1250/QD-BT)을 통해 이전 가격세무조사 방향을 제시
-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APA)
 - 2011-2020 조세개혁정책의 일환으로 APA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4.2.5일 부터 시행(Circular 201/2013/TT-BTC(2013.12.20.))



○ 상호합의(MAP)

- APA규정(Circular 201/2013/TT-BTC(2013.12.20.) 및 조세조약적용을 위한 적용가이드라인(NO. 205/2013/TT-BTC, 2013.12.24) 내 상호합의에 대하여 규정
- 한 - 베 조세조약 제25조와 우리나라 국조법 제22조에 따라 우리나라와 쌍방 APA 및 MAP가능

2 베트남 이전자격세제 심층연구 

□ Circular NO66/2010/TT-BTC

- 특징 : 사례중심의 10개 조문(우리나라 국조법 14개 조문)
 -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는 별도의 Circular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들의 사업거래 상 시가결정에 관한 사례 중심의 규정으로 현행 베트남 이전자격과세의 근거조문(시행규칙)

※ 우리나라 이전자격세제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연구
 - 이하 “(韓)”으로 간략히 표현

□ 적용대상(제1조)

- 특수관계인간 재화를 생산(거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국내 특수관계 인간 거래를 포함하여 규정

< 비교 (vs 韓) >

1. 이전자격에 대하여 어느 한쪽이 비거주자(외국법인)인 국제거래로 한정하고 있으며 국내거래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
2. 개인거주자를 포함



□ 적용범위(제2조)

- 재화를 구매, 판매, 교환, 대여, 임대, 이전, 양도하거나 사업과정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purchasing, selling, exchanging, renting, leasing, delivering or transferring goods or services in the process of doing business)
 - 베트남정부의 정책적 가격법을 따르는 일부 상품제외

< 비교 (vs 韓) >

1. 우리나라의 적용대상 거래는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거래
2. 베트남의 경우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지만, 한국은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이전가격세제를 미적용

□ 특수관계 정의(제3조 용어의 정의 中)

- 일방이 어떠한 형식으로든(in any form) 타방의 관리, 통제, 자본출자 또는 투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 어떠한 형식으로든 일방, 타방의 당사자들이 제3자로부터 관리, 통제, 자본출자 또는 투자를 받는 경우
- 어떠한 형식으로든 일방, 타방의 당사자들이 제3자의 관리, 통제, 자본출자 또는 투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 비교 (vs 韓)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분소유에 의한 특수관계와 실질지배력 기준에 의한 특수관계, 공통의 이해관계에 의한 특수관계로 광범위한 특수관계를 규정하고 있어 유사하나, 베트남의 경우 **형식의 제한을 법령으로 제외하고 있어 보다 범위확대에 용이한 구조를 취하고 있음**



□ 특수관계 범위

○ 지분에 의한 특수관계(20%, 10%)

- 일방이 타방기업의 투자자본 중 20%이상을 직·간접으로 보유
- 제3자가 일방, 타방의 투자자본 중 20%이상을 직·간접으로 보유
- 일방, 타방이 제3자의 투자자본 중 20%이상을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 일방이 타방기업의 최대주주이면서 투자자본의 10%이상을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 실질지배력 기준에 의한 특수관계

- 일방기업으로 부터의 대출이 타방기업 투자자본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타방기업의 장기차입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대여형식으로 사실상 지분투자하는 경우)
- 일방의 이사회 임원 중 50% 이상 또는 감사 중 50%이상을 타방이 지명하며 재무 정책 또는 사업활동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일방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를 타방이 지명
- 제3자가 일방·타방의 재무 정책 또는 사업활동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회 임원의 50%이상 또는 감사를 지정하는 경우(사업 중요의사 결정권의 통제)
- 일방·타방이 부부, 부모·자녀 등 친인척관계에 의해 통제
- 일방·타방이 본사와 고정사업장의 관계를 가지거나 동일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고정사업장(① the relationship of head office and resident establishment or are ② resident establishments of the same foreign organization or individual)
 - * 우리나라에서 복수 진출한 지사, 또는 현지법인 상호간의 관계를 포함함
- 일방기업이 타방기업의 무형자산 또는 지적재산권을 사용한 재화를 제조하거나 거래하며, 총원가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러한 무형자산 및 지적재산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일방기업이 재화를 제조하거나 거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자재, 자재, 소모품 또는 투입한 재고(감가상각비는 제외)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을 타방이 공급

* 우리나라에서 지분 관계없이 운영중인 현지공장(실무상 광범위)

- 일방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의 50%를 초과(각 상품별계산)하는 부분이 상대방 기업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통제

* 대기업의 벤더업체들이 이에 해당됨

-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a business cooperation agreement on a contractual basis, 일명 ‘BCC’)

* 대기업의 벤더업체들이 이에 해당됨

< 비교 (vs 韓) >

1. 우리나라의 지분규정은 50%로 베트남의 20%(최대주주인 경우 10%)에 비해 이전가격 특수관계자 규정이 관대함
※ 상대적으로 우리기업의 이전가격RISK증가요인
2. BCC계약, 상품판매 등 다양한 특수관계자 규정으로 우리나라 진출기업의 대부분이 베트남 이전가격세제 적용 대상이 됨

< 베트남 규정의 한-베 조세조약과 충돌여부 >

제9조 【특수관계기업】

-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하여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 특수관계기업의 구체적 비율이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않아, 자국 세법에 따른 취급과 과세가 가능하며 이전가격에 대한 진출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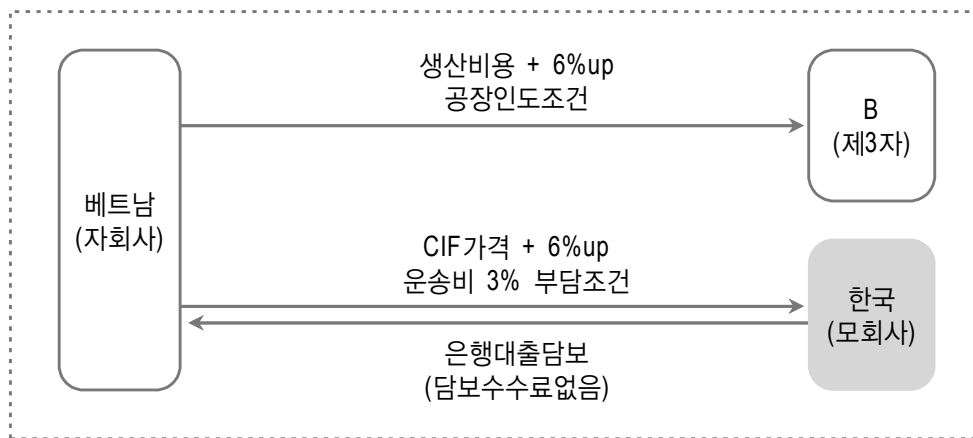


□ 중요한 차이(Material difference)

○ 재화의 가격의 1%이상을 증감시키거나 매출총이익율 또는 이익률의 0.5% 이상을 증감시키는 정보 또는 자료상의 차이

- “정보”와 “자료”의 차이는 자의적인 부분이 가미되어 진출기업의 대처가 사실상 힘들

○ 사례



- (상품가격)상품인도 조건에 따른 차이가 판매가격을 1% 이상 증가시키므로 중요한 차이로 간주됨

- (은행대출담보) 담보로의 차이는 무상으로 제공되므로 중요한 차이로 간주되지 않음

< 비교 (vs 韓) >

1.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의 “중요한 차이”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전가격 실무 상 통상 베트남(가격의 1% 혹은 이익률 0.5%)규정 대비 관대함
2. 중요한 차이를 규정한 유사개념의 상증법 상에는 거래가액의 30%를 중요한 차이로 인식하고 있음



□ 세무당국 자료(Databases of tax off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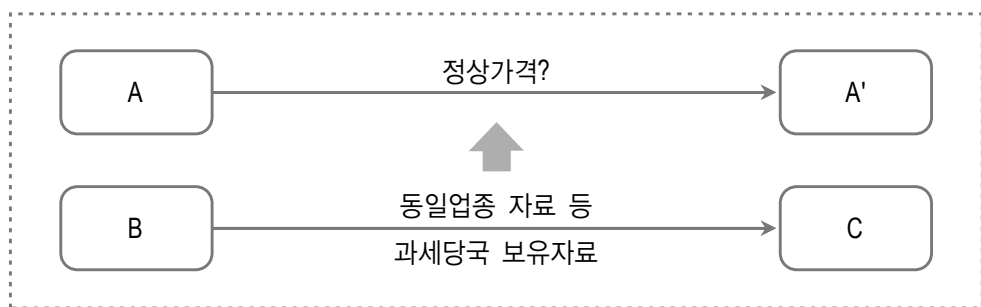
- 세무서가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 분석, 보관, 업데이트 및 관리하는 기업들의 법인세 결정에 관한 정보 및 데이터(information and data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tax liabilities of enterprises which are collected, analyzed, stored, updated and managed by tax offices from various sources)
 - (“Secret Compareable Issue”)베트남 이전가격세무조사의 경우 기업의 정상가격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당국의 자료로 과세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적자를 신고하고 있는 외국계기업의 경우 이전가격입증이 상당히 어려워 고율의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 비교 (vs OECD) >

1. 일반적으로 비공개정보의 사용을 제한하는 OECD가이드라인의 예외적인 적용으로 진출기업의 주의가 필요함
2. 과세노하우가 부족한 베트남이 행정 편의적으로 과세당국보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됨

※ 우리나라 비공개정보 이용하지 않음

○ 과세사례(과세당국 자료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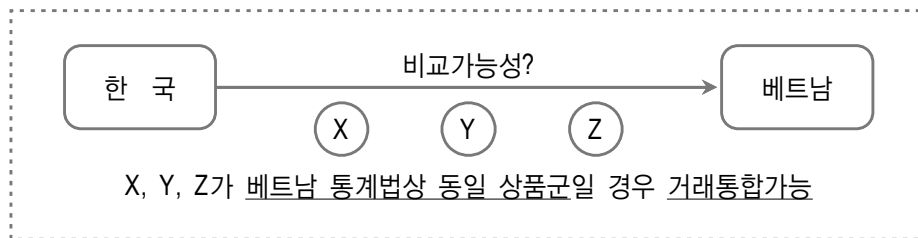




□ **비교가능성 분석(제4조)**

○ **비교가능성 분석 원칙**

- 회계, 통계, 조세법에 의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증거서류, 세금신고 및 문서를 기초로 수행
-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제3자 거래는 유사한 거래특성 및 상황(이하 ‘거래 조건’)에 기반한 거래일 경우에만 활용됨
- 거래조건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서로 비교가능해야하며 상품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가지지 않아야함(단, 차이조정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경우 활용 가능)
- 원칙적으로 상품별로 분석하되 거래를 분리할 수 없거나 상품종류에 따른 분리가 사업 관행상 적절하지 않은 경우 단일거래로 결합할 수 있음
 - 생산과 관련한 무형자산의 공급과 같은 연속적 거래
 - 국가기관이 발표한 상품과 용역 통계목록에서 정한 상품 및 용역의 분류기준에 따른 동일한 집단 또는 품목번호



- 완성된 거래로 통합가능한 소규모의 개별사업거래
- 특정기업이 수행하는 제3자거래 및 특수관계 거래 중 수입 또는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거래로 이 경우 통합된 거래는 모두 특수관계거래로 취급되며 통합거래상의 재화가격은 판매의 경우 관련 재화 가격 중 최고가격이거나 구매의 경우 관련 재화가격의 최저가격임 (수익을 최대화하는 결정)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A기업이 다음과 같은 2가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 1) 특수관계자인 A와 품질관리용역(QC)를 제공하는 계약
- 2) 비특수관계자 C에 QC를 제공하고 특허사용권을 부여하는 계약으로 해당 상품의 단가를 기초로 계산하는 경우, 해당 특허사용권의 발생수익은 QC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5배

- * A가 상기 계약의 수익(비용)을 분리하지 않은 경우 A기업의 총수익은 특수관계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간주되며, 해당 권리부여의 최고가격에 대응하도록 수익을 재결정
- * 분리한 경우 두 거래의 QC용역끼리 대응
- ☞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무형자산과 연계되는 거래가 있는 경우 수익(비용)을 분리하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함

- (내부 제3자 가격 우선)비교대상으로 제3자거래를 선정하는 경우 내부 제3자 거래에 우선권을 두어야 함

베트남 제조기업(A)의 거래가 내부 3자가격에 해당되는 경우

- 1) 일반적 조건에 의해 A가 직접협의를 하고 B에 판매하는 경우
- 2) A가 직접협의를 하지 않고 모회사 S가 B와 직접 협의하고 서명한 계약에 따라 A가 B에 납품하는 경우

- * 1)번 거래는 A의 내부 제3자거래에 해당됨
- * 2)번거래는 계약협의 및 체결과 대금지급에 모회사가 관여하고 통제하였으므로 제3자거래 취급되지 않음
- ☞ 대기업 벤더로 진출하여 모기업에 의해 거래를 통제받는 우리진출기업의 경우 내부3자 거래가격을 활용한 경우 추후 세무조사시 과세당국의 통상적 판단에 따라 거래가격을 부인당할 가능성이 매우높아 주의가 필요함

- (비교대상거래의 최소건수 규정) 비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제3자 거래의 최소건수를 지정하고 있음

구 분	최소건수
제3자거래와 특수관계거래의 차이가 전혀없는 경우(CUP)	1건
제3자거래와 특수관계거래간 차이가 있으나 기업이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정보 및 자료를 충분히 보유하는 경우	3건
기업이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정보 및 자료만 보유하고 기타 차이를 더 제거하는 경우	4건

* 이익분할법을 적용하는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 < 비교 (vs 韓) >
1. 비교가능성의 측면에서는 한국 규정과 유사함(OECD)
 2. 베트남의 경우 미세한 부분까지 구체적 규정에 따라 과세
 3. 비교대상거래의 최소건수 규정은 없으나 사분위값 활용을 위해 다수의 비교대상거래를 적용함

○ 차이조정 기준(유사성 검토)

- (재화의 특성)재화의 종류, 재화의 품질 및 상표, 재화 이전의 특징에 따라 유사성 검토
 - 독점유통,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노하우 포함여부 등
- (수행기능)자산, 자본 및 관련 비용의 사용 등 그 기업 활동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요소와 수익성간의 관계를 입증
 - 연구 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 디자인 및 품목개발(Designing, development of product models)
 - 생산, 제조, 가공, 프로세스, 설치(Processing, assembly)
 - 배급, 유통, 홍보, 광고, 재고 관리, 운송 및 보관
 - 중개, 컨설팅, 교육, 회계, 감사, 인력 관리, 노동력 제공 및 정보 수집 등 전문 용역의 제공
- 사례(수행기능 적용)

기 능	제3자	차이조정
단순 라이선싱 제약업자(A)	R&D	R&D기능 조정
상기 A업체의 모기업 제품 유통	중개거래업자	중개거래수수료율 별도 조정
휴대폰 유통 및 A/S	휴대폰유통	A/S수익부분제거 ^{*1)}

* 1)단, A/S의 횟수와 수입, 비용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조정생략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계약조건)거래 당사자들의 책임 및 이해 관계에 대한 규정 또는 구속력 있는 합의
 - 재화의 수량 및 인도 또는 유통에 관한 조건
 - 대금 지급의 시기, 조건 및 방법
 - 보증, 교환, 업그레이드, 수리 또는 조정에 관한 조건
 - 재화의 독점적 거래 및 유통에 관한 조건
 - 기타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조건(예 : 품질관리, 사용안내, 홍보지원, 관촉 등의 관한 업무협력 및 자문 용역)

< 계약의 실질 >

서면계약 상의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 거래형태에 따라 관련 재무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함

In all cases(with or without written contracts), the bases for identifying contractual terms are factual events or financial and economic data reflecting the character of transactions

- (경제적 여건)거래 이행 시점에서의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의 경제적 상황
 - 재화 생산 또는 판매 시장의 규모 및 지리적 위치
 - 시장에서의 거래의 시기와 성질
 - 시장에서 재화간의 경쟁력
 - 생산 및 영업과정에서 거래 장소에서 발생하여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소(예 : 세금, 수수료, 금융 우대)
 - 정부의 시장규제 정책

< 지역요소사례 >

베트남 이전가격이 본격화 된 이후 비교가능성에 대한 공표된 사례가 많지 않으나, 실무적으로 PAN-ASIA Comparable을 인정한 사례가 있음

☞ 베트남 진출기업이 유사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과세가 지속되고 있어 사례가 누적되기 까지 벤치마킹하는 것은 위험



○ 차이조정 방법

- 차이와 관련된 비용, 매출항목이 별도로 계상된 경우 해당 각 매출 또는 비용을 기준으로 차이 조정
- 차이와 관련된 비용, 매출항목이 별도로 계상되지 않은 경우, 안분계산으로 조정(중요하지 않은 차이는 생략)

□ 정상가격 결정방법(제5조)

○ 베트남 정상가격 결정방법(5가지)

- 비교가능제3자가격법(CUP)
- 재판매가격법(RP), 원가가산법(CP)
- 비교가능이익율법(The comparable profit method)
- 이익분할법(The profit split method)

○ 최적방법의 원칙(The most appropriate price determination method)

- 5가지 방법 중 거래조건에 부합하고 충분하고 신뢰가능한 근거자료로 입증되는 방법
- 기업은 “표준시가”(the values of the standard market price range) 범위 내의 가격 중 최적의 가격(“정상가격”)을 직접 선정하여야하며 거래가격이 선정한 최적의 가격과 상이하더라도 과세소득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조정하지 않음
- 표준시가의 범위

구 분	범 위
제3자거래와 특수관계거래의 차이가 전혀없는 경우(CUP) ※ 최소 비교대상 : 1건	산 출 된 특정가격
제3자거래와 특수관계거래간 차이가 있으나 기업이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정보 및 자료를 충분히 보유하는 경우 ※ 최소 비교대상 : 3건	
기업이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정보 및 자료만 보유하고 기타 차이를 더 제거하는 경우 ※ 최소 비교대상 : 4건	4분위 가 격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적용사례

베트남 제조기업(A)은 모회사의 제품을 생산하고 모회사의 그룹내 다른 회사로 매년 순 매출의 연 N%를 분기별 지급

- 1) 특수관계거래의 차이가 전혀없는 경우 : 찾을 수 없음
- 2) 차이를 조정할 정보, 자료를 충분히 보유 : 지급기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해당 자료는 금전으로 환산하기 불충분
 - 최소 비교대상을 4건 이상 찾아 4분위값을 적용해야 함
 - 1 / 1.25 / 1.25 / 1.5 / 1.5 / 1.75/ 2/ 2/ 2/ 2.25/ 2.5/ 2.75/ 3 (총13개)
 - * 중앙값 2, 1사분위 수 1.5, 3사분위 수 2.25(범위 1.5~2.25)

☞ 표준시가 범위에 해당하는 값을 산출하고 조정

□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 정의 :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으로 상품의 “단가(the unit price of products)”를 기준으로 함
- 비교가능성 결정요소 순위
 - 재화의 특성과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기능과 경제적여건은 보완적요소에 해당함

< 비교가능성 >

베트남의 경우 각 정상가격산출방법별 비교가능성 우선순위를 법령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통상적 이전가격이론에 준함)

☞ TP Report 작성 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점작성

- 적용요건(동일유형 + 차이조정가능)
 - 시장에서 유통되는 각종 재화의 개별적 거래
 - 용역, 저작권 또는 대출계약의 각종 형태에 대한 개별적 거래



- 기업이 동종 재화에 대하여 비특수관계자 거래를 실시하는 경우(내부 가격 우선원칙)

○ 적용사례

베트남 제조기업(A)은 동일스타일의 의류에 관한 두건의 거래

- 1) 한국 모회사에 12,000pcs를 12벌 당 60달러에 가공하여 항구로 운송(수출은 한국 모회사가 담당)
 - 2) 일본에 소재한 제3기업에 12,000pcs를 12벌당 미화 100달러에 가공하여 일본의 특정도시로 운송
 - 항구에서 일본의 특정도시로 운송하는 비용은 12벌당 3달러
→ 60달러와 100달러를 직접비교할 수 없음
“중요한 차이 제거(운송료 부담)”
- ※ 제3자거래가격 : 97,000달러 $[(\$100 - \$3) * 1,000]$
 이전가격과세조정 : 37,000달러
- ☞ 내부 제3자가격법에 의한 조정사례임

□ 재판매가격법(Resales Price Method)

- 재판매가격에서 재판매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영업비용과 수행 활동에 비추어 적절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매출총이익을 차감하고, 그 차감금액(재판매가격-매출총이익)에서 물품구입과 관련한 다른 원가(관세 등)를 조정한 후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순 매출 대비 매출총이익의 비율

○ 비교가능성 결정요소 순위

- 수행기능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계약조건, 재화의 특성, 경제적여건은 보완적 요소

- 단순한 유통만을 하는 경우(일명 ‘유통대리인’ distribution agent without ownership of products)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경우 판매가격(순 매출) 대비 매출총이익의 비율로 간주
- 순 매출대비 매출총이익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 기업이 수행한 기능을 반영하는 비용(예 : 독점 유통 대리, 광고 또는 판촉 프로그램 수행 또는 보증 등)
 - 재판매용으로 구매한 재화의 종류, 규모, 수량 및 회전주기와 시장 거래의 운영상 특성(예 : 도매, 소매 등)
 - 회계처리방법(즉, 특수관계자 거래와 제3자 거래의 매출총이익과 매출의 구성요소가 비교 가능하거나 동일한 회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함)
- 주요 사용 업종 : 단순 용역, 도매
 - 구매시점에서 재판매까지의 회전주기가 짧으며 계절성의 영향을 덜 받는, **단순 용역**과 구매에서 재판매 이전에 가치가 부가되지 않은 단순 도매에 주로 적용
- 적용사례

베트남 유통기업 A는 한국 모회사의 시계를 유통함

- 1) 한국 모회사는 시계 1,000개를 인도하고 33만불 요청(CIF + TAX, 수입관세는 A가 납부)
- 2) A사가 판해한 시계의 순매출은 연말 기준 40만불
- 3) 제3자인 B도 시계유통사업자이며 매출총이익율 20%

정상가격 : \$400,000 - (\$400,000 * 20%) = \$320,000

해당연도 공제가능 원가 : \$320,000

만약, **재화판매 컨설팅용역도 제공받았다면** 해당비용은 공제가능하며 별도의 이전가격적용



□ 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

- 정의 : 재판매가격에서 재판매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상품의 원가를 기준으로 매출총이익을 가산
 - 매출총이익은 원가 대비 매출총이익의 비율 및 원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이는 기업이 수행한 업무와 시장 상황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이익을 반영
- 비교가능성 결정요소 순위
 - 수행기능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계약조건, 재화의 특성, 경제적여건은 보완적 요소
- 로열티 및 대출이자
 - 직·간접적 생산 비용이 아닌 금융활동 관련 비용(예 : 로열티 및 대출이자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단, 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총이익을 산출하는 데 기준으로 사용된 상품의 원가에 모두 포함하여 계산
 - ※ 정상가격 산출금액 증가효과
- 단순한 구매만을 하는 경우(일면 ‘구매대리인’ purchase agent without ownership of products)
 -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경우 원가대비 매출총이익의 비율로 간주
- 순 매출대비 매출총이익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 기업이 수행한 업무를 반영하는 비용(예 : 계약에 따른 생산, 신제품 연구개발, 투자 등 부가된 가치의 비중)
 - 계약 이행 의무(예 : 상품의 운송 소요시간, 품질관리 및 보관 비용, 대금지급조건)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회계처리방법(특수관계자 거래 및 제3자 거래의 원가(또는 원가가격)의 요소가 서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회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함)

○ 주요 사용 업종 : 단순 임가공, 계약생산 등

-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상품 생산, 조립, 제조 또는 가공 단계에서의 거래
- 조인트벤처, 사업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생산요소 공급 및 산출 상품의 구매계약(off-take)
- 특수관계자들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

○ 적용사례

베트남 제조기업 A는 한국 모회사의 수출용 신발을 가공

- 1) 모회사에서 지정한 디자인 및 모델에 따름
- 2) 원재료, 부재료, QC, 운송, 보험의 책임은 모회사에 있음
- 3) 제품단위 당 임가공료를 받고 가공활동과 관련한 비용부담
 - 순 매출(임가공료) : 150억 베트남 동, 매출원가 : 130억 베트남 동
 - 판관비 : 18억 베트남 동, 비교대상기업 : 7%를 총원가대비 수령정상가격 : $(130억 동 + 18억 동) + [7\%(130억 동 + 18억 동)] = 158.36$
해당연도 신고해야할 매출 : 158.36 베트남 동

□ 비교가능이익법(Method of profit comparison)

- 해당 거래들이 유사한 거래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특수관계 거래의 이익률을 결정하기 위해 비교대상으로 선택된 제3자 거래의 이익률을 비교
 - 이익률 : 베트남 회계기준에 따라 세전 이익의 순 매출, 원가, 자산에 대한 비율(세전 이익에 생산 및 사업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이자비용 및 감가상각비는 가산가능**)



○ 비교가능성 결정요소 순위

- 수행기능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계약조건, 재화의 특성, 경제적여건은 보완적 요소

○ 비교지표 별 사례

- 매출액 대비 세전이익율

베트남 한국자동차는 모회사 브랜드 A와 비특수기업 브랜드 B를 생산하여 A는 전부 모회사에 납품하고 B는 제3자에 판매(제조 및 조립을 위한 모든 매입거래는 제3자거래로 가정)

- B브랜드 순매출(비특수) : 18,000달러
- B브랜드 발생 세전이익 : 2,000달러
- A브랜드 순매출(특수) : 25,000달러
- A브랜드 발생 세전이익 : 1,800달러
- 모회사는 베트남한국자동차에 시장금리로 대출제공(이자100달러)

※ 특수관계자거래 정상가격 계산

- 1) B브랜드 순매출대비 순이익 : 11.1%
- 2) A브랜드 순매출대비 순이익 : 7.2%
- 3) A브랜드 총원가 25,000달러 - 1,800달러 - 100달러 = 23,100달러
- 4) 순 매출(정상가격) 23,100달러/(1-0.111) = 25,984달러
- 5) 이자비용 차감전 세전이익 : 25,984달러 - 23,100달러 = 2,884달러
- 6) 세전이익 : 2,884달러 - 100달러 = 2,784달러

해당연도 신고해야할 매출 : 2,784달러(1,800달러 X)

- 자산대비 세전이익율 : 총 투자자자본에서 고정자산비율이 높은 경우 사용(채굴업자 등)

* 자산의 가치 : 유동자산, 고정자산을 포함하나 조인트벤처, 사업협력계약의 자본출자 자산을 제외한 해당 기간의 과세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잔액의 평균값을 활용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총원가 대비 세전이익율

베트남 운송업체인 A는 전부 모회사를 위한 운송용역을 대리하고, 독립기업 C는 많은 독립고객들을 위해 운송용역을 제공한다 가정

구 분	A	C
총원가	1,500	2,000
총매출	1,650	2,500

- A사의 총원가 대비 세전이익율 : 10%
- C사의 총원가 대비 세전이익율 : 25%

※ 특수관계자거래 정상가격 계산

- 1) A사 세전이익 : $1,500 * 25\% = 375$
 - 2) A사 순매출 : $1,500 + 375 = 1,875$
- 해당연도 신고해야할 매출 : 1,875(1,650 X)

○ 비교가능이익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 기업들의 주요 기능의 수행을 위한 자산, 자본 및 비용
 - * 기업이 투자한 기계에 의한 생산 및 가공은 다른 시설로부터 임대한 기계에 의한 생산 및 가공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
- 운영의 성격, 제품 그룹 및 생산 또는 판매의 단계
 - * 완제품은 원료 또는 원자재로 만들어지거나 반가공 제품에 의하여 만들어질 경우 기대수익이 다름

○ 주요 사용 업종 : 광범위(베트남 과세당국의 이전가격과제)

- 상대적으로 재판매가격법 및 원가가산법의 비교가능성이 완화되어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임

□ 이익분할법(Method of profit division)

- 다수 특수관계자들의 이익을 결합한 후 비교가능한 비특수관계자거래의 제3자들이 이익을 활용 각각 적정이익 재배부
 - 제품에 밀접하게 연관이 된 다수의 특수관계자 거래로 구성되거나 특수관계 당사자들 간에 이행된 특수관계자 거래로 구성된, 특별하고, 독특한 성격의 거래(Unique)



○ 이익분할법 적용방법

- (부담한 원가기준)자본의 투자, 원가의 공동부담에 기초하여 각 특수관계 당사자에게 이익을 배분
 - ※ 총이익을 총 투자자본에서 해당 기업의 특수관계 거래에서 사용된 자본(원가)에 비례하여 배분
- (잔여이익분할법)기본적인 이익을 배분하고 독특한 무형자산의 비율에 차지하는 비율을 잔여이익에 적용하여 분할
 - 1단계 : 독특한 무형자산을 고려하지 않은 기본적 수행 기능에 따라 기본 이익의 일부를 수령
 - 2단계 : 잔여 이익을 독특한 무형자산을 고려하여 분배하여 기본 이익과 함께 결합(최종)이익을 구성함
 - ※ 잔여이익할당기준 : R&D 제품 비용, 또는 제품의 생산 또는 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무형 자산 또는 지적재산권 가치

○ 주요 사용 업종

- 특수관계 당사자들이 함께 신규 제품을 조사하고 개발하거나 독점적인 무형자산이 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에 참여하거나 또는 여러 단계를 거쳐 제조하는 경우
- 재료에서부터 최종산출의 단계까지 단독 소유권 또는 지적재산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품의 유통을 위한 특수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영업 절차 내의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

A사와 A'사는 핸드폰을 제조하는 동일한 그룹에 포함
 A사는 조립품을 제조하고, A'사는 독립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기전 소프트웨어를 조립, 설치

1) 특수관계자거래 관련 자료

구 분	A	A'
순 매출	200	500
매출원가 총액	190	450
- 원자재	100	200
- 생산원가	50	150
- R&D	30	50
- 판관비	10	50
이 익	10	50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 결합된 영업결과에 대한 재산출

구 분	금 액
순 매출	500
매출원가(원자재, 생산원가)	300
R&D	80
판 관 비	60
이 익	60

3) 원가대비 매출총이익이 A, A' 각각 10%, 8%에서 시가결정

※ 이익분할법 적용

1단계) 기본이익 분배

- 이익 = 매출총이익률 * 원가
- 원가 = 판매된 제품 비용 + R&D비용 + 판관비
- A사 이익 : $10\% * (100 + 50 + 30 + 10) = 19$
- B사 이익 : $8\% * (300 + 80 + 60 - 190) = 20$
- 잔여이익 : $60 - 19 - 20 = 21$

2단계) 잔여이익분배(R&D비용기준)

- A사 분할비용 : $30/80 * 100\% = 37.5\%$
- B사 : 62.5%
- A사 이익 : $21 * 37.5\% = 8.87$
- B사 이익 : 12.13

해당연도 신고해야할 매출 :

- A사 : $19 + 8.87 = 27.87$
- B사 : 32.13

□ 특정한 경우의 정상가격 결정방법(제6조)

- 특수관계거래의 특수성 때문에 5가지 시가 결정 방법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규정
 - 기업의 사업 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사유를 밝혀야 함
- 통합분석
 - 비교대상 선정범위를 국가 통계상의 기타 부문으로 확장하여 통합분석하는 것으로 투자, 사업효율성, 경제성장, 부가가치 반영을 위해 해당 산업에서 사용되는 경제기준을 토대로 비교가능성의 4요소를 분석하고 중요한 차이제거



- 비교대상기업의 수는 최소한 5개 이상이어야 함
- 사분위값 활용
- 상품의 가격, 매출총이익률 또는 이익율이 표준 시가 범위의 평균보다 낮지 않거나 또는 상품의 매입가격이 평균보다 높지 않을 경우, 이익을 조정할 필요가 없음
- 특수관계 거래상의 상품의 가격, 매출총이익률 또는 이익율이 평균보다 낮거나 또는 상품의 매입가격이 평균보다 높을 경우, 회사는 표준 시가 범위 내 가장 적합한 값에 따라 이를 조정
 - ※ 조정 값은 해당 가격, 매출총이익률 또는 이익율을 반영하는 평균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해당 매입가격을 반영하는 평균보다는 높지 않아야 함

○ 기간 간 수치적용(Method of using figures between periods)

- 기간 간(단, 특수관계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해서는 안됨)에 이루어진 비교 가능한 특수관계 거래를 적용
 - ※ 비교가능성 분석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중요한 차이를 조정하며, 각 기간의 경제적 가치 조정을 위한 객관적 근거(평균가격 상승률, 이자율, 인플레이션율, 경제성장)를 사용

- 1) 2013년 A기업은 특수관계 거래와 비특수관계거래를 모두 수행하였으며 X금속의 3.5%를 함유하고 있는 광석 1톤 당 800달러로 가격 결정
- 2) 2014년 A기업은 생산량 전량을 자신의 모회사에 수출 (비교가능기업을 찾기 힘들며, 2014년 X금속의 세계시장가격은 2013년 대비 20%상승하였으며 다른요인은 그대로)

※ A사의 2014년 정상가격
 $800 * \text{금속인상률 } 20\% = 960$

< 비교 (vs 韓) >

1. 우리나라 국조법 상 상계거래에 관한 규정과 연도별 통산하여 정상가격을 판정하는 규정은 존재함
2. 단, 베트남의 기간지표를 활용한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전가격 조사 등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한적 벤치마킹가능 (평균가격상승률, 이자율, 인플레이션율에 의한 과세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될 것으로 판단)



□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자료 및 원장보관, 제공(제7조)**
(Keeping & Providing data and source document...)

○ 정상가격 산출방법 서류 보관

- 정부기관, 정부부서, 정부부속기관, 조사기관, 협회 및 정부가 인정한 국제 전문 기구의 요청에 따라 공개 또는 제공된 정보 또는 자료
- 독립된 전문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승인된 기관 및 개인(예를 들어, 외부 감사기관, 등기사무소(register offices) 또는 품질 등기사무소(quality register offices), 기업의 신용평가 및 분류 업무 기관)이 공개 또는 증명하는 정보 또는 자료
-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연차재무제표 또는 정기재무제표 및 투자 보고서 등 공시자료
- 기업이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위하여 제공하며, 책임을 지는 사업거래 관련 자료, 전표 및 문서
 - ※ 비공식적 또는 미확인 출처로부터 취득한 자료, 전표 및 문서는 참조용으로만 사용

○ 최소 3개년 연속 회계연도 기간 내 자료 반영

- 존속 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특정 기간에만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경우 1개월, 1분기, 1계절 가능

○ 절대값의 수치(%로 표기된 비율) 사용시 해당 수치의 소수점 셋 째 자리에서 반올림

- 공개된 상대수치가 절대값이 아닌 경우 공개된 수치를 사용

구 분	사용수치
매출총이익율 5.2856%	5.286%
공개된 경제성장률 7.8%	7.8%
공개된 이자율 4.9854%	4.985%



< 벤치마킹 자료활용 >

베트남 당국은 지침 상 공시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뷰로반다익사(국세청 ORBIS제공사) 등 벤치마킹자료 활용에 대한 인정여부에 대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음

→ 과세당국 보유자료의 사용을 통한 이전가격과세 강화조치로 판단

- 정보, 문서 및 증빙자료 보존 및 제공요건
 - 작성 시기 : 특수관계 거래의 시가 결정 방법과 관련한 정보, 문서 및 증빙자료는 **거래 발생 시 작성**
 - 보존 및 갱신 : 거래상의 상품의 시가 결정 또는 방법 적용의 근거로서 이용된 정보, 문서 및 증빙자료는 **보존해야 하며, 이행 기간 동안 업데이트 및 보충**
 - 관련 자료제출 : 세무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시 제출
 - 매년신고 : 법인세신고납부기한까지GCN-01/QLT(36page참조)
 - 보존해야하는 정보의 내용(TP Report)

구 분	베 트 남
기업과 특수관계자에 관한자료	특수관계에 대한 정보(지분도)
	특수관계자들 간의 개발, 관리 및 통제 전략에 대한 업데이트 문서 및 보고서(거래가격 결정에 대한 정책)
	개발, 사업전략, 투자, 생산 및 사업 프로젝트 및 계획 과정에 대한 문서 및 보고서(재무제표 작성 및 내부관리 규정 및 절차)
	조직도 및 기능을 설명하는 문서
해당 거래에 대한 정보	거래 당사자, 상품 주문, 결제 및 인도 절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의 도해 및 설명자료
	상품의 특성 및 기술사양을 기술한 문서, 상세 단위생산비용(원가), 상품의 판매가, 기간 별 총 생산량, 구매량 및 판매량 [특수관계 거래 및 제3자 거래를 구별(자료가 있다면), 상품 수량]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구 분	베 트 남
해당 거래에 대한 정보	거래와 관련된 경제 계약/합의의 협상, 체결, 이행 및 청산 절차에 대한 정보, 문서 및 전표
	시장의 경제 상황에 관한 정보, 문서 및 증빙자료(환율,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재정적 선호)
정상가격 결정방법	기업의 판매 및 구매가격, 상품 교환에 관한 정책, 가격 관리 및 승인 절차, 다른 판매 시장에서의 제품 판매가격 리스트
	비교가능성 분석, 중요한 차이의 조정, 기업에서 적용하는 가격 결정 방법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 산출표 및 그러한 방법의 적용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정보, 자료 및 전표를 포함하여 기업의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장 적합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선정 및 적용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로서 사용된 정보, 문서 및 증빙자료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 결정 방법 선정 및 적용과 관련하여 기타 참고용 정보, 문서 및 증빙자료

- 제출 기한 : 세무당국의 서면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 (1회에 한해 30일 연장)
- 제출 방법 : 공증법 규정을 준수하여 서면으로 정보, 문서 및 증빙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세무당국에 제공
- 언어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 및 전표는 회계법 규정과 회계기준에 따라 베트남어로 번역
 - ※ 기업은 번역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

< 비교 (vs 韓) >

1. 우리나라의 자료제출기한은 60일 이내(60일 연장가능)로 **베트남 제출기한이 최대 4배 짧음**
2. 우리나라 진출기업 대부분이 거래시점에서 **정상가격서류를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

☞ 우리나라 진출기업의 이전가격조사대응이 체계적으로 필요



□ 기업의 권리 및 의무(제8조)

- 이전가격세제의 별도 권리, 의무 부여
 - 특수관계인들간의 사업거래 정보 비밀유지요청
 - 이전가격관련자료의 작성 및 보관 의무

□ 세무당국의 책임 및 권한(제9조)

- 기업의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책임
- 이전가격 경정권한
 - 불법, 무효한 증빙, 근거없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거나 거래에 적용된 가격, 매출총이익률 또는 이익률 결정에 사용된 정보, 자료 및 전표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 비교대상거래를 위조하거나 특수관계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사용하는 경우
 - 특수관계거래신고서(GCN-01/HTQT) 미신고, 부실제출
 - 세무당국 요청에 대해 기한 내에 이전가격보고서 미제출
 - 세무당국의 이전가격입증요청에 대하여 90일 내에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경정방법
 - 협력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 그 방법
 - ※ 단, 해당 산출방법으로 정상가격율을 조정함
 - 그 외의 경우 : 세무당국 데이터베이스(Secret Comparable)
 - 조정값 : 중위값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비교 (vs 韓) >

1. 세무당국의 데이터베이스 적용을 중심으로 과세가 이루어짐
(최근 우리기업에 10~20%를 초과하는 이익률을 적용한 과세사례 보도)
 2. 서류의 제출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방법을 부인하고 세무서 데이터베이스로 경정(우리나라는 가산세 규정)
- ☞ 베트남 진출기업의 이전가격 부문 최대 이슈

□ 이전가격 불이익(Penalty)

- 이전가격경정시 과세공무원 재량에 따라 경정세액의 100~300%까지 가산세 부과

< 비교 (vs 韓) >

1. 자료제출 불이행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가산세 부과가능함
2. 가산세 적용의 특례 :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를 면제하는 규정 有
 -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
 - 납세의무자가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를 보관·비치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



□ 특수관계거래신고서(GCN-01/HTQT,'14.1.1) 한글요약

구 분	수익(수입), 비용항목 구분				TP에 의한 증가이익
	장부 금액	정상 가격	차이	정상가격산출방법 (TPM)	
1.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					
2. 특수관계거래 발생이익					
3. 상품거래					
고정자산으로부터 발생					
고정자산 외로부터 발생					
4. 용역거래					
연구개발					
광고, 마케팅					
경영자문, 교육훈련					
금융활동					
로열티					
이자					
기타 용역					

* 매년 신고 총 3page로 구성

※ 서명 확인 문구
 Tôi cam đoan số liệu kê khai trên là đúng và tự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pháp luật về số liệu đã khai.
 “우리는 상기내용이 정확하며 완전하고 명백한 책임질수 있는 자료임을 보증합니다.”

< 비교 (vs 韓)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서 제출시 제출하나, 재고, 무형자산, 이자, 사용료, 용역으로 구분이 세밀하지 않고, 전체 거래금액만 작성할 뿐, 정상가격과 차이금액의 조정은 없음
 ※ 베트남 신서식이 한국서식에 비해 제공할 정보량이 많음
- 베트남은 본 서식의 제출 및 성실작성 여부를 이전가격경정요건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본 서식의 불충분이 있는 경우 베트남 과세당국의 자료로 경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주의요망



3 이전가격 과세 대응방안

□ 사전적 대응

- 베트남 이전가격 조사지침에 따른 중점조사대상에 선정되지 않도록 적자 신고를 하지않는 것이 중요
 - '11년부터 외국계 투자기업 중 누적 적자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조사 대상자에 선정되고 있으며, 베트남 과세당국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함

< 사례 >

매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단순 임가공 업체의 경우, 적자폭이 가장 큰 연도의 손익을 “0”으로 만드는 비율을 산출하고 기타 연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과세

- 지속적 적자속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글로벌 기업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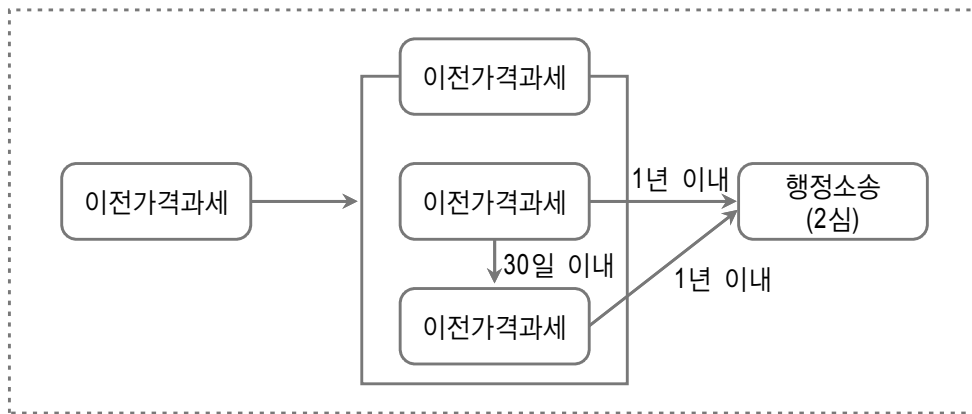
- 거래 건별 이전가격서류가 자동으로 준비되도록 ERP시스템을 구축(계약서, 가격산정방법 등 추후 바로 준비가능하도록)
- 자체 조사시물레이션을 통해 계약서와 실제 이행기능의 차이가 없는지 점검(증빙과 실질의 일치)
- 동일 업종에 대한 세무서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위해 섬유, 전자 등 업종별로 이전가격조사의 순환이 이루어 지고 있는 바 진출기업과 유사한 기업의 조사사례가 있는 경우 즉각 대비
- 우리법에 따른 특수관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범위가 넓은 베트남 세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베트남 기업과의 거래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



- 무형자산, 용역(경영 자문료 등)의 경우 증빙과 실질이 일치하더라도 세무당국의 이전가격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교가능 기업자료를 **베트남 세법에서 정한 공시자료에 의해 수집대응**
- 특수관계자거래신고서의 제출을 유의하고 세무당국의 요청이 있을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에 이전가격서류 비치
- '14년부터 신설된 APA규정을 활용하여 이전가격RISK관리

□ 사후 대응

- 상호합의절차(MAP)활용 (* 세부내용 77page참조)
 - 한 - 베 조세조약 제25조와 국조법 제22조에 따라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상호합의 신청(대응조정)
- 조세불복제도
 - 이전가격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불복을 통해 조정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임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가적 대응

- 한 - 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 정기 국세청장 회의시 우리기업의 베트남 현지 세정애로사항을 수집하여 개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 진출기업을 위한 세정 세미나 개최
 - 과세사례와 대응방안에 대한 국세청 주도의 세미나 개최

4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 관련규정

- 과세당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적용지침서(Circular NO201/2013/TT-BTC)
 - '13.8.23일 초안 발표
 - '13.12.20일 발효, '14.2.5일부터 시행
 - 2012-2015 이전가격액션플랜에 따른 규정으로 베트남 이전가격세제의 매우 중대한 변화임
 - (우리나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로 규정

□ APA 정의

- 과세당국과 납세자 서면 약정서에 의해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과 근거를 정의한 한 협약
 - 과세당국 : 국세청 (the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지방세무서 (Departments of Taxations of provinces)



□ 적용대상

- 법인세(CIT)를 납부하는 납세자(APA신청기한 내 신청)
 - 국내 외 거래를 모두 포함[operate in multiple localities (Including other countries or territories)]
 - 모든 사무소(every office)가 별개의 회사(separate company) 로 간주

□ APA유형(일방, 쌍방, 다자간 모두 규정)

- 일방APA : 베트남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APA
- 쌍방, 다자간APA : 베트남 과세당국과 납세자, 1개 이상의상대방국가 과세당국 간 APA

□ APA 적용거래

- 특수관계자 간 매출, 교환, 임차, 물품 및 용역 이전
- 거래를 통합하여 특수관계거래로 신고할 수 있음
 - 건별 신청이 원칙이나 거래가 상호의존적인 경우로 이전가격규정에 의해 기능, 자산, 위험 유사한 경우에 해당

< 경영자문료 >

베트남 규정상 경영자문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용역의 이전으로보아 신청가능**

단, 베트남 자회사에 부담된 경영자문료(Management fee)는 특정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공제불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영자문료는 베트남 내에서 인정받기 어려움

* APA 신청시 심사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됨



□ APA 적용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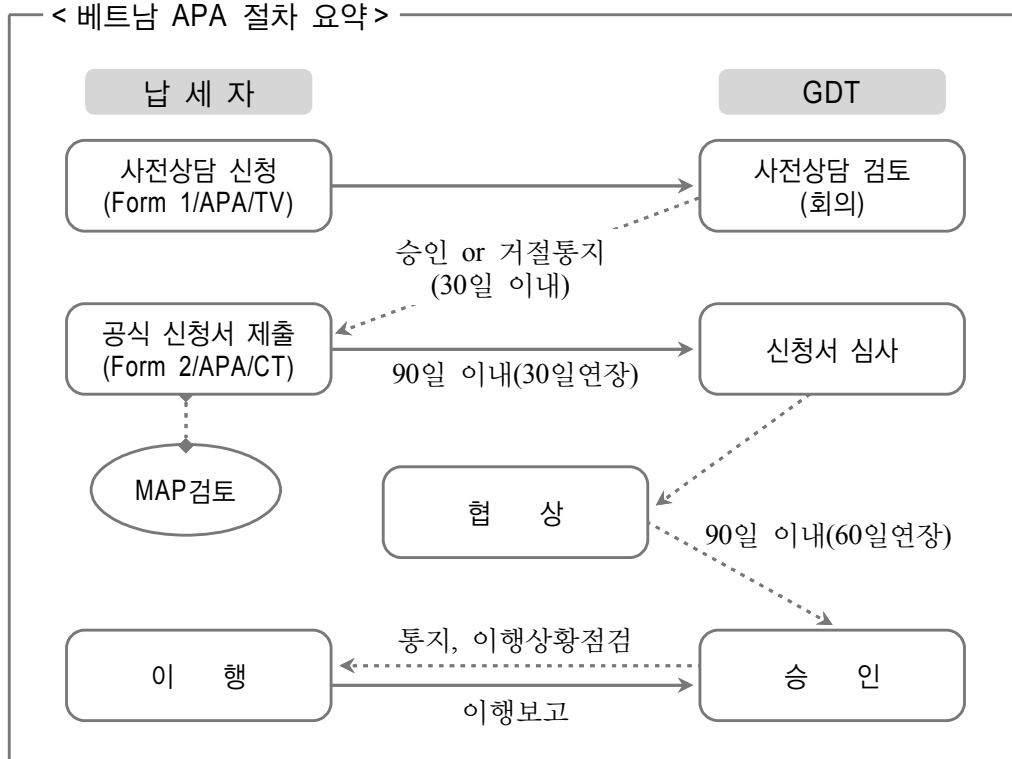
- 협상(negotiate) :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정상가격원칙에 따른 법률 적용에 대한 협상에 의해 적용됨
- APA 지향(목적)
 - 과세당국의 징수비용과, 납세자의 세무협력비용을 절감
 - 사업 성격에 적합한 시장가격을 결정, 적정이익을 산출하여 정상가격에 대한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
 - 이중과세 및 탈세를 방지
 - 납세자는 APA 협상기간동안 세금을 현행과 같이 신고납부
- APA 정상가격 결정방식
 - 이전가격규정(Circular 66)을 준수하며 선정방식의 본질이 선정방법의 명칭보다 더 중요함(실질에 따름)

□ APA 관련 권한

- 재무부(The Ministry of Finance)
 - 협상, 승인, 수정, 갱신, 철회 및 무효화 계획을 승인
- 국세청(The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GDT”)
 - 신청서 접수, APA 협상 진행, 승인, 수정, 갱신, 철회 및 무효화, APA 이행에 대한 감독 및 조사
- 지방세무서(Departments of Taxation of provinces)
 - APA협상, 이행(업무의 범위 한정)



□ APA 절차 요약도



□ 사전상담

- 요건 : 납세자의 APA신청요건 검토 요청시
- 사전 상담 유형
 - 신규 APA체결 및 추가거래에 대한 신청 여부 불문
 - APA 만료일 임박으로 인한 갱신시 **과세당국이 요청**하거나, 납세자가 요청할 수 있음
 - 일방APA에서 쌍방, 다자간으로 전환할 경우 가능

< 사전상담 >

사전상담을 거쳐야 본 신청을 할 수 있어 강제규정임
우리나라는 의무는 아니나 사실상 대부분 사전상담을 거침(권장)



- 사전상담 제출서류(납세자의 의무)
 - 납세자명, 소재지, 특수관계거래 당사자의 상호 및 주소
 - APA의 유형(쌍방, 다자간 APA 관련국가 명)
 - APA가 적용되는 특수관계거래 및 적용되지 않는 특수관계거래 특정 거래 선정사유 및 특정 거래가 제외 사유
 - 특수관계거래의 가격 범위
 - APA 적용 희망기간
 - APA규정에 따른 납세자 및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기능, 자산 및 위험에 대한 분석
 - 비교가능성 분석, 데이터, 산정 방식, 사분위 범위 및 정상가격결정을 위해 제안
 - APA 영향을 주는 중요한 추정
 - 회사의 범위 및 납세자의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로 법인의 영업에 관련된 정보 (사업의 종류, 자본, 구조, 사업범위를 포함)
 - 납세자 관할에서 진행된 세무조사결과 요약
 - 유사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해서 외국의 과세당국과 APA를 승인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특수관계거래
 - 해당 외국 과세당국의 의견(해당하는 경우)
 - 신청서 제출 시간, 연락처
 - APA실행에 영향을 주는 기타 사항(시장분석, 사업전략, 정책, 다른 조세 채무에 끼치는 영향 등)
- 서면기록원칙 : 모든 상담은 서면으로 기록
- 사전상담결과통지 : 30일이내에 APA공식제출 승인여부 통지
- 사전 상담 요청서식(1/APA-TV)



□ APA신청서 제출

○ 공식신청서(2/APA-CT) 제출

○ 기한 : 서면상담 승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2일 이내

○ 제출기한 연장 : 서면으로 요청(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첨부자료 내역

1) 기본사항

- 납세자명, 소재지, 특수관계거래 당사자의 상호 및 주소
- 납세자의 Tax codes(본점, 지점 및 부서의 tax codes 포함)
- 납세자 및 특수관계자의 주요 사업 종목에 대한 정보

2) 특수관계 거래 및 범위

- APA가 적용되는 특수관계거래 및 적용되지 않는 특수관계거래 특정 거래 선정사유 및 특정 거래가 제외 사유
- 특수관계거래의 가격 범위
- 적용되는 APA 유형, APA 적용 희망기간

3) 기업 현황

- 기업의 연혁 및 운영에 대한 종합적 정보
- 기업 및 납세자의 조직 구조
- 가치사슬에 대한 개요 및 해당 가치사슬에서 APA가 적용되는 특수관계거래가 속한 단계
- APA적용대상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흐름에 대한 상세 설명 및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진 유사 특수관계거래
- 자본구성 및 관계(직·간접 투자, 대출, 구성원(partner)들 간의 투자 비율 등을 포함)
- 특수관계자의 사업 특성
- 기업의 사업전략 개요 및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 적용일 이후 5개년 사업계획 또는 적용 기간 동안 납세자가 활용하는 사업전략 설명

4) 산업 분석 정보(산업 및 시장동향 분석)

- 납세자의 시장점유율
- 위험요소, 기회, 시장성장을 촉진하는 요소
- 다른 국가나 영토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정부 정책 및 규정과 같은 산업에 대한 기타 정보
- 납세자 및 특수관계자의 기능, 자산 및 위험 상세 분석.
- 납세자 및 APA 거래상대방은 당사자들 간의 자원 및 인프라 배분을 포함하여, 기능, 자산 및 위험의 상세 분석
- 지적 재산 및 무형 자산 : 해당 자산의 소유자, 사용자, 지적 재산 보호를 위한 등록방법 및 등록시기, APA적용대상 물품 혹은 서비스 가격산정구조 하에서의 무형 자산 가치
- 회계규정, 특수관계자 사용 통화(currency) 및 APA가 적용되는 특수관계거래를 위해 사용된 통화
- 가치사슬(value chain), APA 적용 거래와 관련된 거래사슬 및 APA 적용 유사 거래에 대한 상세 정보
- APA 적용 및 비적용 거래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의 제조, 공급 및 유통 과정
- 납세자의 주요 공급자 및 고객 정보
- 기타 독립 당사자와의 거래 설명

5) 재무정보

- APA가 적용되기 직전 3년 간의 감사 받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및 법인세신고서(3년 이하인 경우 전체)
- 특수관계자是的 3년 간의 감사 받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및 법인세 신고서
- 시장 및 재무 관련 기타 정보 및 계획



6) 정상가격 결정방법

- 정상가격 결정방법의 입증(근거)
- 비교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분석, 비교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선택 사유, 가격결정을 위해 선정된 방식과 데이터베이스와의 적합성 및 양립성 설명(차이조정 포함)
- 특수관계거래 재무 정보에 해당하는 APA 적용 기간 동안정상가격 결정 방식 입증(가격, 매출총이익률, 순이익률, APA가 적용되는 특수관계거래에 관한 영수증 및 지출에 대한 수입금(receipts) 및 지출금에 대한 추정된 영향력을 산정하는 것을 포함)
- 시장가격결정방식이 이전에 사용된 방식과 다른 경우, APA적용 기간 직전 3~5년 동안 납세자의 재무정보에 적용한 시장가격결정방식에 대한 입증(납세자가 설립된 지 3년 이하인 경우, 영업기간에 시장 가격결정방식을 적용)
- APA가 적용되는 거래와 유사한 기타 특수관계거래에 적용된 시장 가격결정방식에 대한 일반정보
- 유사거래의 비특수관계거래 자료(가격결정에 대한 규모 및 설명 관련 정보를 제공, 해당 거래가 비교대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이에 대한 설명)

7) 중요한 추정

- APA 특수관계자의 기여비율 변동
- 기능, 자산, 위험의 변동(무형자산, 지적 자산 등 추가 투자)
- 조세정책 및 외국환 관리에 대한 변동
- 사업허가증 발급, 정부시책

8) APA 적용 거래 관련 국의 법인세 신고에 관한 정보(국내법 및 관련 조세조약 간의 관계)

9) 유사 APA 체결본의 복사본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10) 소유권 계약, 서비스 사용, 판매, 유통 권리, 개발연구 등, APA 적용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납세자 및 특수관계자 간 계약서 및 법적 합의서 복사본
 - 11) 세제인센티브, 조사결과(이전가격조사 포함),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결정 및 통지 등
- 제출언어 : 베트남어로 3부
 - 쌍방 APA, 다자간 APA 영문본 첨부
 - 납세자는 번역본에 서명 날인을 해야 하고 번역 내용에 책임
 - 해당 문서의 전산파일을 제공
 - APA 내용 색인 : 해당 문서가 보존되는 위치와 방식
 - 제출정보의 통일성
 - 쌍방 APA, 다자간 APA를 신청하는 경우, 베트남 과세당국 및 외국 과세당국에 제출된 문서 내 정보 및 데이터는 유사해야 하며 최소한 위에 언급된 정보로 구성
- APA신청서 심사절차
- 심사기간 :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기간연장 :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서면통지)
 - 최초 회의 : 제출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APA 신청 처리 계획 및 순서를 합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
 - 국세청의 확인
 - APA 관련정보 및 데이터 확인을 위해 납세자와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정보 및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청
 - 납세자 관할 사업구역(사업소 포함)에서 확인을 위한 조사를 수행 (협의 또는 조사 내용은 과세당국 및 납세자가 기록)



- 심사내용
 -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검색, 평가 및 비교
 - 기능, 자산, 위험 분석을 정보 및 증거 검색, 평가 및 수집
 - 비교가능성 분석 정보 및 증거 검색, 평가 및 수집
 - 납세자의 사업 성격에 적합한 시장가격결정방식 검색 및 선정
 - 제3자로부터 수집한(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포함) 정보 및 데이터 검색, 확인 및 분석;
 - 중요한 추정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중요한 추정의 합리성 평가

- 쌍방, 다자간 APA 과세당국 정보제공(납세자 → 국세청)
 - 외국 과세당국이 납세자로 하여금 정보 및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문서를 과세당국에 충분히 제공

- 정보교환 자료통지(국세청 → 납세자)
 - 교환된 정보, APA 협의 및 체결 기간 동안 문서 및 증거로 사용된 정보 (조세조약의 정보교환조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납세자로부터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

- APA 협상 및 논의
 - 협상 매체 : 전화, 온라인 동영상 또는 우편

 - 일방 APA
 - 협상은 과세당국이 작성한 APA 초안위주
 - ※ APA 초안은 사전에 납세자에게 송부할 수 있음

 - 쌍방 APA 또는 다자간 APA
 - 외국 과세당국의 관할 공무원에게 과세당국의 대표자(The representative of the tax administration)는 조세조약의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APA 협상 내용 통지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쌍방 APA 또는 다자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관할 공무원 및 과세당국에 의해 합의된 경우, 납세자는 과세당국 대표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사안에 대한 문서나 설명을 제공
- 과세당국은 협상의 진행상황 및 결과를 간략하게 알릴 수 있으며 납세자로 하여금 관련 사안에 대한 추가정보, 데이터 또는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APA 승인 및 사용

- 협상이 종결된 APA 초안은 APA 최종안으로 체결
- 최종안에 포함되는 사항
 - APA가 적용되는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
 - APA가 적용되는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세금, 가격, 매출총이익률, 순이익률 산정을 위한 기초로서 정상가격 결정방식(적합한 경우 사분위수 범위 포함)
 - APA 시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추정
 - 납세자 책임 및 의무에 대한 규정
 - 과세당국의 책임 및 의무에 대한 규정
 - 시행시기
 - APA 관련 조세채무 이행에 관한 법률에 상응하는 기타 규정
- 통지 주체 및 방식
 - 일방 APA : 승인에 대한 서면 통지문과 함께 과세당국이 최종분을 송부(납세자의 법률대리인은 APA 최종본에 서명 날인하고 과세당국에 이를 다시 송부)
 - 쌍방 APA, 다자간 APA : 외국과세당국과 합의한 최종분을 납세자에게 송부하고 납세자의 승인을 기재한 회신을 요청(과세당국 대표자와



납세자의 법률대리인은 쌍방 APA 또는 다자간 APA에 서명 날인, 국세청은 쌍방 APA 및 다자간 APA를 발표)

- APA 공식언어 : 베트남어(쌍방 APA, 다자간 APA 영문본사용가능)

□ APA 유형 선택

- 1차 선택 : 납세자 신청서 제출시 선택(일방, 쌍방, 다자간)
- 유형변경 : 신청서가 처리되는 중 유형변경가능
-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 외국 과세당국이 APA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베트남 과세당국과 외국 과세당국이 소정의 관례적인 협상 기간 이후 APA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 베트남 과세당국과 외국 과세당국의 담당 공무원이 정보를 교환하거나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 절차를 따르면서 납세자의 승인을 받아 일방 APA를 쌍방 또는 다자간 APA로 변경하기로 상호합의한 경우

□ 정상가격범위결정을 위한 자료 및 정보

- 베트남 과세당국 규정 자료
 - 감사 받은 재무제표;
 - 산업 관련 정보; 증권 시장에 대한 규정에 따라 공시된 정보
 - 국가가 인정한 국가 기관, 리서치 기관, 협회 및 전문가 조직의 요청에 따라 공개되거나 제공된 정보
 - 인가를 받은 정보 제공업체로부터 수령한 정보
 - 기타 공식적 자료
- 비교대상 선정시 우선순위
 - 1st) 국내 업체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2nd) 유사한 경제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현지 국가의 업체
- 3rd) 아세안(ASEAN) 가입국에 있는 업체
- 4th)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업체
- 5th) 전세계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

< 벤치마킹 >

입증가능하고 신뢰성있는 베트남 국내업체의 공시자료는 많지 않음
Pan-asia, Ascan 자료를 실무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독립적 전문가 참여

- “참고자료” 목적으로 독립적 전문가를 참여시킬수 있음
 - ※ 법적 구속력 없음
- 기밀 유지 : 협상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는 기밀유지의무준수

□ 신청서 철회 및 APA 협상 종결(승인전)

- 신청서 철회 및 종결(승인전) : 가능함
- 납세자 : 신청서 제출
- 국세청에서 협상 종결하는 경우
 - 해당 거래가 조세 관리에 관련된 행정상 위반으로 인해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해당 거래가 탈세, 조세회피, 또는 조세조약 남용을 위한 거래인 경우
 - 납세자가 과세당국이 요청하는 충분한 문서 및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전혀 제공하지 못한 경우
 - 납세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과세당국이 쌍방 APA 또는 다자간 APA 협상을 종결하기로 상호합의한 경우
- 종결통보 : 납세자와 외국 과세당국에 APA 협상의 종결통지



□ 납세자의 APA 이행 의무

- 납세자 이행 책임
 - 협상, 승인 및 이행에 관련된 문서를 보관할 책임이 있으며 과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를 과세당국에게 제공
- 연례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매년(특수관계거래 신고서GCN-01/QLT와 함께 제출)
 - 연례보고서의 구성(3/APA-BC)
- 연례보고서 내용
 - 기능, 자산 및 위험 변경, 특수관계거래의 과세 표준으로 APA에서 명시된 방식을 이용한 가격, 매출총이익률, 순이익률산정
 - APA 준수에 관한 내용(중요한 추정치 업데이트 또는 변경)
 - APA에 따른 납세자의 세액 변경 내용 및 세액증감을 가져온 지표의 변경에 대한 내용
 - APA 조건 및 관련 사안(세금에 관한 새로운 사안, 관련 분쟁 등)을 유지·변경하는 데 관한 납세자의 의견
- 과세당국 요청에 따른 보고
 - 과세당국의 서면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보고
- 비정기 보고
 - APA기간 중 APA의 지속이나 납세자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 시 30일 이내에 보고
 - 보고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과세당국은 납세자에게 이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지시(APA의 수정이나 종료등)
- 일방 APA가 시행 중 상호합의(MAP) 요청권리
 - 외국 과세당국의 결정에 의해 이중과세 또는 과세소득 변경이 발생되어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청할 권리



- **성실한 자료제공 책임**
 - 납세자는 충분하고, 사실적이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출한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짐

- **과세당국의 의무 및 권리**
 - APA 이행 감독 (APA의 재심사 목적 아님)
 - 서명된 APA의 규정(시장 가격의 결정 방식 포함) 준수
 - APA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의 신고, 세금 납부 및 조정
 - 납세자가 제출한 정기적 및 비정기적 보고 내용 검토 및 확인

- **비밀유지(Confidentiality)**
 - 과세당국과 납세자는 조세관리법(Law on Tax administration) 제6조 제3항에 따라 APA의 절차 전반(문서 평가, 논의, 협상 및 APA 이행에 관한 모든 절차 포함)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비밀로 유지할 책임

- **타(他) 목적 사용금지**
 -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 APA 연례보고서 및 비정기적 보고서는 과세당국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나 세금 부과를 위한 증거로 사용하지 않음

- **APA 승인에 따른 과세조정(수정신고, 경정청구)**
 - APA에 서명하기 전에 법인세 신고서를 기 제출한 경우 납세자는 과세당국이 세무조사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는 한, APA가 서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소득을 가격, 매출총이익률 및 순이익률으로 조정하기 위해 추가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구 분	조 정
법인세액 증가	해당 세액 + 가장 낮은 율의 연체이자(payment interest)
법인세액 감소	해당세액 환급



○ APA외의 비용발생

- 해당 지출 발생일 후 30일 이내 서면 신고하고 과세당국의 의견이 있는 후 법인세 신고서를 변경

A사는 2013년 추가적인 지출로 순이익이 4.5%로 감소(APA 5%) 감소된 사유가 APA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일 경우, 0.5%의 부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후 손금처리가능

○ APA 승인거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수관계거래

- 정상가격원칙에 맞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조세관리법 제34조(추가 세금 신고서)에 따라 납부할 세금을 조정하기 위해 APA상 과세소득산정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

□ APA의 효과

- 과세당국과 납세자 모두에게 구속력(승인내용 준수)
- APA는 최대 5년간 유효(Roll Forward)하다
- 효력발생시기 : APA 신청서 제출 시

< 비교 (vs 韓) >

우리나라는 소급적용(Roll back)을 신청할 수 있음
일방 : 3년, 쌍방 5년

□ APA의 연장

- APA : 5년 이하 기간연장
- APA 연장사유
 - 특수관계거래의 범위 및 특수관계자들에 대한 중대한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중요한 추정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 비교가능성 분석을 위해 사용된 사분위 범위 또는 매출총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연장 기간 동안 안정된 경우
- APA 연장절차
 - APA 만기일 최소 6개월 이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
 - APA 연장 신청은 APA 신청규정을 준용
- APA의 수정(APA adjustment)
 - 수정 : 납세자, 과세당국의 요청
 - 수정 가능 사유
 - 중요한 추정이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변경된 경우
 - 법률 변경이 APA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외국 과세당국에서 APA 변경을 요청하고 동의한 경우
 - 기타(APA 당사들이 합의하는 경우 등)
- APA의 취소(APA cancellation)
 - 취소 가능 사유
 - 납세자, 관련인이 APA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APA 신청서, APA 연례보고서, 비정기적 보고서의 중대한 실수
 - 연례보고서 또는 비정기적 보고서에서 충분한 문서 및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APA 수정(adjustment)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외국 과세당국이 APA 취소를 요청하고 동의한 경우
 - 타당한 사유로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
 - 취소 내용 공개 : 취소 사유, 취소일
 - 적용일 : 취소일로부터, 현재 규정에 따라 취소된 APA 거래에 대한 세금을 납부



□ APA의 취소(APA Withdrawal)

○ 철회 사유

- 납세자가 APA 변경을 신고하거나 요청할 때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외국 과세당국이 APA 철회를 요청하고 동의한 경우

○ 철회 내용 공개 : 철회 사유, 철회일(APA기간의 첫 날부터)

○ 적용일 : 철회일부터, 납세자는 철회된 APA 대상거래에 세금 납부

□ APA 비용 : 없음

□ APA 사례 : 2014.2월 최초시행으로 알려진 사례 없음

5 상호 합의(MAP) 

□ 관련규정

- 과세당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적용지침서(Circular NO201/2013/TT-BTC) 제19조
- 베트남 조세조약 적용지침서 제7조 (Circular NO205/2013/TT-BTC, 2013.12.24)
- 한 - 베 조세조약 제25조(상호합의절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 상호합의 절차

- 상호합의개시신청서(4/APA/MAP) 제출
 - 쌍방, 다자간 APA 신청가능

- 상호합의 개시신청서 내용

- 1) 외국 납세자의 상호, 주소, TAX CODES
- 2) APA당사자간의 관계(조직도 포함)
- 3) 외국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외국 과세당국의 명칭, 주소
- 4) 쌍방 APA, 다자간 신청에 대한 설명
- 5) 지원 필요성에 대한 요약설명
- 6) 외국과세당국이 회람한 관련 문서
(특수관계거래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한 이중과세 등)

- 상대과세당국 관련절차

- 상호합의 절차 및 공식 APA개시신청 후 30일 이내
-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답변서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 납세자에게 결과통지
- 납세자 상호합의 내용 이행

- 상호합의 신청기간 : 과세상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의 최초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

□ 기타 베트남 MAP 관련사항

- 과소자본세제 부인 비용의 가능여부

- 베트남은 아직 과소자본세제 도입전(前)
'16.1.1부터 과소자본세제와 유사세제를 도입할 예정

- 조세범 처벌법 등으로 고발된 경우 상호합의가능여부

- 베트남 조세조약 적용지침서 제7조 :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베트남 권한 있는 당국이 해결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



- MAP와 불복의 동시제기가능여부
 - 양자간 선택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세조약 적용지침상 법원 계류중인 경우 베트남 당국이 조정할 수 없으므로 불복 또는 상호합의 중 선택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비교 (vs 韓) >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는 권한 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절차의 결과를 기속하게 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법적 측면에서 더 우위에 있음
→ 상호합의 중단 및 통보

- 징수유예 등 가능여부
 - 상호합의에 이르는 중 모든 의무를 다해야하면 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
- TP에 대한 본격적 과세가 최근 이루어져 상호합의 CASE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조세조약과 별도의 법령으로 상호합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이전가격과세방법의 차이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제 2 장 외국인계약자 세제

1 관련규정 및 조세조약과의 관계



□ 관련규정

- Circular NO.60/2012/TT-BTC(2012.4.12)
 - 베트남에서 사업 또는 수익이 발생하는 외국법인, 개인에 적용되는 납세의무 이행에 관한 가이드라인
- 이전 시행규칙 Circular 134/2008/TT-BTC(2008.12.31)
- 베트남 내 외국인의 납세의무(법인세, 부가세 등)은 이미 있던 것으로 새로운 납세를 창출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것

□ 기존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과의 관계

-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납부하고 별도로 “외국인계약자”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님

□ 한 - 베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와의 관계

- 이중과세 방지대상 조세(조약 제2조)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베트남 : 개인소득세, 이윤세, 이윤송금세
- 외국인계약세제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충돌하지 않음
 - 외국인계약세제 : 부가가치세, 매출에 대한 수입세

□ 고정사업장과 사업소득

- 한-베 조세조약 상 고정사업장이 없는 사업 이윤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외국인계약세제의 경우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과세되는 경우가 많아 이중과세 미해소로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이 급증



○ 고정사업장(한-베 조세조약 제5조)

-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
- (예시)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및 광산, 유전,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 채취장소
- 건축장소, 건설 및 설치공사 : 6개월을 초과
- 고정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재화나 상품의 저장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장소
 - 저장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재고보유
 -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을 목적으로만 재고보유
 - 단순 구입 및 정보의 수집 목적만을 위한 장소
 - 예비적 보조적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장소
- 종속대리인 : 특정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기업명의로 계약체결권을 상시하는 경우

< 애로사항 >

- 베트남 과세당국은 베트남 내 용역제공 및 계약체결에 대하여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이윤에 대한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음
→ 외국인계약세제 적용
- 베트남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베트남 법인에 제품을 수출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베트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원 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국제세원-178, 2012.4.13)
→ (예)고정사업장 없이 로열티를 송금 받고 외국인계약세제에 따라 원천징수 당한 경우 (10%)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인 5%를 차감한 5%는 인정하지 않음
- OECD 모델조약 주석서 상 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으로 “at the disposal of”, “binding”으로 해당 행위가 상위기업의 지배하에 놓이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도록 해석될 수 있으며, 특히, 로열티 등 무형자산 용역의 경우 베트남 측에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어 주의요망
→ 해당 권리가 없으면 그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는 의미



2 외국인계약자 세제 적용대상

□ 명칭 : FCWT(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 적용 대상

- 외국계약자, 외국하청계약자와 베트남 법인, 개인과의 계약, 동의 또는 약속으로,
 - 고정사업장의 해당 유무와 상관없이, 베트남에서 사업하거나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는 법인
 - 거주자 해당 유무와 상관없이, 베트남에서 사업하거나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는 개인
 - 외국 법인(개인)과 베트남에 있는 기업간에 서명된 계약으로,
 - 베트남내에서 현지 수출입 형식에 따라 베트남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그리고 수익 발생이 있는 외국법인(개인)
 - DDP³⁾, DAT, DAP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외국 법인(개인)
- ※ 외국 법인(개인)을 위해 임가공하고 재수출 하는 경우 제외

예시 1)

외국 기업 A가 베트남 기업 B로부터 직물을 구입(임가공)하는 계약에 서명하고, B가 베트남 기업 C에게 물품을 인도하도록 지정한 경우
 → 기업 A는 A와 C사이에 계약을 기초로 베트남 발생수익 有
 A는 외국인계약세제의 적용대상이되며 C가 원천징수 납부

예시 2)

외국기업 A는 베트남기업B와 직물을 임가공(구매)하는 계약(원자재는 A가 공급)하고 기업 B가 기업 C에 임가공하도록 물품을 인도할 것을 지정한 경우 임가공종료후 기업 C는 Z에 물품을 재수출하고 기업 Z는 임가공료를 지불
 → 임가공재수출로 외국인계약세제 해당없음

3) DDP : 지정목적지 관세지급인도조건, DAT : 도착터미널인도조건, DAP : 도착장소인도조건



□ 납세의무자

-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또는 수익이 발생하는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
 - 기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고정사업장, 거주가에 대하여 달리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협정의 규정에 따름

< 주의사항 >
 한-베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계약자 계약 또는 하청계약자 계약을 기초로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불한 자
 - 기업법, 국영기업법, 외국인투자법 및 합작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정치, 정치-사회, 사회, 사회-직능 단체 등 기타 경제단체
 - 석유가스법에 따라 운영하는 석유가스 계약자
 - 베트남에서 활동 허가된 외국회사 지점
 - 외국법인 또는 베트남에서 활동 허가된 외국법인의 대표
 - 직접, 또는 협력 방식으로 베트남 출발, 도착 운송권이 있는 항공사의 베트남 내 매표 사무소, 대리점
 - 외국해운사의 해운서비스운영 법인(개인)의 외국 포워딩·창고 회사, 운송사의 베트남 내 대리점
 - 증권투자펀드 또는 외국법인이 증권투자계좌를 개설한 증권사, 증권 발행회사, 펀드 관리회사, 은행
 - 베트남에 소재하는 기타 법인 및 개인

- 원천징수 의무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시 원천징수 해야함

□ 적용 세목 :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 비적용 대상

- 투자법, 석유가스법, 각 신용기관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외국 법인, 개인.
-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베트남 내 수행 서비스가 없이 베트남 법인, 개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외국 법인, 개인
 - 외국 국경 관문에서의 물품 인도 (판매자 : 외국 국경관문에서의 물품 수출과 물품인도와 관련된 모든 책임, 비용, 위험을 부담, 구매자 : 외국 국경관문에서부터 베트남으로 되돌아 오기까지 물품 수령, 물품 운송과 관련된 모든 책임, 비용, 위험을 부담)
 - 베트남 내 국경관문에서의 물품 인도 (판매자 : 베트남내 국경관문에서의 물품 인도장소까지의 물품관련 모든 책임, 비용, 위험을 부담, 구매자 : 베트남내 국경관문으로부터 물품 수령, 물품 운송과 관련된 모든 책임, 비용, 위험을 부담)
- 베트남 영역 밖에서 공급되고 소비되는 서비스

홍콩기업 H 는 홍콩항에서 베트남기업 V의 국제운송선단을 위해 물품 정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V는 H에게 물품정리비용 지급
→ 홍콩에서 발생되고 지급된 용역으로 FCWT 해당없음

- 베트남 법인, 개인을 위해 외국에서 수행되는 아래 서비스를 공급하는 외국 법인(개인)
 - 이동수단(공기, 항공기 엔진, 항공기 부품, 선박), 기계, 설비(해저 케이블, 전송설비)의 수리(Repair)
 - 광고, 마케팅(인터넷상의 광고, 마케팅은 제외)

베트남기업이 싱가포르시장에서 상품광고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싱가포르 법인과 계약을 맺은 경우 싱가포르 법인의 광고서비스는 FCWT의 대상이 되지 않음(외국수행용역)
단, 인터넷으로 베트남시장에서 소비할 상품광고를 실행하는 경우 FCWT해당됨



- 투자 및 무역 촉진
- 중개 : 외국에서의 물품 판매, 서비스 공급

베트남기업이 태국 또는 세계시장에서 베트남 기업의 상품판매를 위하여 태국 기업과 중개서비스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 FCWT 해당안됨

베트남기업이 **베트남 기업부동산**을 중개하도록 용역계약체결?

→ FCWT 해당됨, 국내에서의 서비스공급으로 봄

- 교육훈련(온라인 교육훈련을 제외)

국외에 가서 국외에서 공부하는 경우는 FCWT해당안됨

단, 온라인학습의 형식으로 베트남에서 베트남 직원들에게 교육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FCWT해당

- 베트남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베트남과 외국간의 국제 우편, 통신 서비스의 분할 요금

< 용어 >

1) 베트남 영토

- 육지영토, 해도, 내수면, 영해 및 그 상공, 영해 밖 해역을 포함하고 베트남 법률 및 국제법에 따라 주권, 주권적 권리, 재판권을 행사하는 해저, 해저토양을 포함

2) 계약자 계약 “Contractor Contact”

- 외국계약자와 베트남 측 당사자간의 계약, 동의, 약속

3) 하청계약자 계약 “Contractor Contact”

- 하청계약자와 외국계약자간의 계약, 동의, 약속으로 하청계약자는 외국 하청계약자와 베트남 하청계약자를 포함

□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 베트남에서의 생산, 사업, 소비를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 또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속하는 물품관련 서비스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베트남 내에서 공급되고 베트남에서 소비
- 베트남 외에서 공급되고 베트남에서 소비
- 물품인도 장소가 베트남 영토 내 일 것
- 설치, 시운전, 보증수리, 유지관리, 교체, 기타 물품공급관련 서비스 등과 같이 베트남 수반되는 물품 및 서비스
 - 물품가격에 대해서는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 서비스가격 : FCWT로 납부
- 물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금액을 분리할 수 없는 계약(서비스 비용 면제 포함) : 계약 전체 일괄 계산

베트남기업 V는 외국기업 K와 시멘트공장용 기계설비 라인구매를 위한 계약에 서명(부가가치세 10% 해당설비)

총 계약금액은 \$ 100백만(\$80백만 기계설비, 나머지는 설치안내, 설비감리, 보증수리, 유지관리 대금)

- 1) 기계설비라인 수입시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 2) 서비스금액 \$20백만에 대하여 FCWT 추가 산출
- 3) 설비와 서비스금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 전액에 대하여 FCWT 산출, 중복과세

< 주의사항 >

- 1) 물품과 서비스의 금액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물품과 서비스를 합산하여 높은 세율로 일괄계산됨
따라서, 일반적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분리하여 계약하는 것이 유리
- 2) 온라인 수행용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음
동일한 용역이라도 수행매체에 따라 FCWT적용이 달라질수 있음

□ 법인세(기업소득세) 납부대상

- 베트남에서 서비스, 물품관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의 수익



- 다음 형식으로 공급되는 물품 및 서비스금액
 - 물품공급장소 : 베트남 영토
 - 또는 설치, 시운전, 보증수리, 유지관리, 교체 등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서비스에 수반되는 물품

베트남기업 V는 외국기업 K와 시멘트공장용 기계설비 라인구매를 위한 계약에 서명
 총 계약금액은 \$ 100백만(\$80백만 기계설비, 나머지는 설치안내, 설비감리, 보증수리, 유지관리 대금)

- 1) 기계와 서비스금액을 나누어 별도로 산출
- 2) 설비와 서비스금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 전액에 대하여 FCWT 산출

-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의 베트남 내 발생 수익
 - 계약과 관련한 모든 수익(사업활동 장소와 무관)
- FCWT 납부대상 수익(예시)
 - 소유권, 재산사용권 양도 수익
 - 사용권, 지적소유권 이전 및 기술 이전(형식 불문)
 - 자산의 양도 및 정리(liquidating) 수익
 - 대출금 이자 수익 : 모든 수수료금액 포함
 - 증권 양도 수익
 - 계약위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벌금, 보상금
 -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수익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3

외국인계약자세제 산출방법



□ 공제방법에 의한 방법

- 수익확정을 위한 매출, 비용신고를 전제로 한 방법
- 요건(3가지 모두 만족)
 -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베트남 거주자
 - 계약자계약, 하청계약자 계약에 따른 베트남 내 사업기간이 계약자계약, 하청계약자 계약이 효력이 있는 날을 포함하는 날로부터 183일 이상
 - 베트남 회계제도(VAS) 적용
- 법인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
 - ※ 본 연구서 제3장 참조

□ 고정비율에 의한 방법

- 공제방법의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금을 지급하는 베트남측 당사자가 원천징수 납부

1) 부가가치세

- 계산 방법
 - 납부할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총액 * 부가가치세율
 - 부가가치총액 : 부가가치 계산 대상 매출액 *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계산대상 매출액 : 베트남 측 계약자가 지급한 각종 비용을 포함한 세전 매출액 전부



○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 결정 사례

- 부가가치세 불포함 계약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 = 부가가치세 불포함 매출액 /
1- (매출대비 부가가치율*부가가치세율)

외국계약자 A는 베트남 V에 시멘트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총괄감리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불포함(법인세포함) 300,000USD(그 외 베트남 V는 A의 관리직원을 위한 숙소와 사무실을 제공하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불포함 40,000USD)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 = (300,000 + 40,000) / (1-50%*10%) = 357,874USD

- 재하청 계약을 하는 경우 : 하청계약자 부분은 불포함하고계약 수행을 위한 물품, 서비스 금액은 외국계약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 결정시 제외되지 않음

외국계약자 A는 베트남 V에 시멘트공장을 건설계약을 체결 총 가격은 10백만 USD, 계약에 따라 베트남 하청계약자 C 에게 1백만 USD의 금액을 재하청(A : 설치이행 원재료 등 각종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외국계약자 A 의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

10백만 - 1백만 = 9백만 USD

(설치 이행 등 물품 및 서비스 금액은 제외하지 않음)

- 하청계약자가 고정비율 방법에 따라 세액을 납부 이행하는 외국 하청 계약자 : 베트남측 당사자로부터 매출액 전부(외국하청계약분 제외)

- 베트남으로부터 외국으로 가는 국제 물류(포워딩), 창고 서비스(지급자 불문) : 매출액 전부

※ 운송사 지급 국제운송비용 불포함

- 베트남으로부터 외국으로 가는 국제운송 서비스(지급자 불문) : 매출액 전부

외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의 운송서비스 :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아님

베트남으로부터 외국으로의 운송서비스 :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부가가치 세율(%)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율(0, 5, 10%)
- 업종별 부가가치 계산비율(%)

사업분야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계산비율
서비스(석유굴착 제외) 기계설비대여, 보험	50
석유굴착서비스	70
건설작업에 동반되는 원재료 또는 기계, 설비가 포함되는 건설, 설치	30
건설작업에 동반되는 원재료 또는 기계, 설비가 포함되지 않는 건설, 설치	50
운송, 제조, 기타사업	30

- 두가지 이상이 통합된 거래 : **사업활동 별 부가가치세 계산 단, 가액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업종별 최고부가가치율과 계약금액 전부에 대한 최고세율을 적용**

외국계약자 A는 베트남 V와 75백만USD의 발전소 건설계약체결

- 기계, 설비 공급 : 50백만
- 기술라인 설계, 기타설계 : 5백만
- 공장건물 건설 및 설치 : 15백만
- 감리, 설치 서비스 : 3백만
- 기술 훈련, 시운전 : 2백만

- 1) 전체 75백만USD에 대하여 부가가치 30% 적용함
 - 건설작업에 동반되는 원재료 또는 기계, 설비가 포함되는 건설, 설치
- 2) 하청계약자에게 원재료 계약을 포함하는 일부 작업수행 계약체결
A는 서비스 기능만 수행한다면 서비스부분에 대한 부가가치 50% 적용



2) 법인세(기업소득세)

○ 계산 방법

납부할 기업소득세 :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 * 적용 기업소득세율

-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 :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령한 부가가치세 불포함 매출액 전부 (베트남 측 계약자가 지급한 각종 비용을 포함)

○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 사례

- 기업소득세 불포함 수령하는 경우

※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 = 기업소득세 불포함 매출액 /
1- 계산대상 매출액에 대한 기업소득세 계산비율

외국계약자 A는 베트남 V에 시멘트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총괄감리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불포함 285,000USD(그 외 베트남 V는 A의 관리직원을 위한 숙소와 사무실을 제공하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불포함 38,000USD)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 = (285,000+38,000) / (1-5%) = 340,000USD

- 재하청 계약을 하는 경우 : 하청계약자 부분은 불포함하고 계약 수행을 위한 물품, 서비스 금액은 외국계약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 결정시 제외되지 않음

외국계약자 A는 베트남 V에 시멘트공장을 건설계약을 체결 총 가격은 10백만 USD, 계약에 따라 베트남 하청계약자 C 에게 1백만 USD의 금액을 재하청 (A : 설치이행 원재료 등 각종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외국계약자 A 의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 : 900백만USD

- 기계, 설비, 운송수단 임차 : 임차료 전부(보험, 유지관리, 등록 비용, 운송수단 운전자, 기계 등 지불 비용, 기계설비 운송비용지급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에 따라 제외가능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외국항공사 : 운항, 부대사업으로 수입전부(국가수입제외)

외국항공사 A의 발생 수입액 100,000USD
여행자 티켓발권 85,000USD, 항공화물 운송장 판매 10,000USD
공항이용료 1,000USD, 티켓환불금 2,000USD
기업소득세 계산매출액 : $100,000 - 1,000 - 2,000 = 97,000$

- 외국해운사 : 여객운송, 물품운송운임, 기타 부수입(중간항 환적처리비용 포함), 베트남 내 처리항간의 이동 운임

※ 운송운임 : 기업소득세가 이미 계산된 운임, 베트남 해운사업자에게 지불한 운임은 불포함

기업A는 외국 해운사 X의 대리점으로 해운대리점 계약에 따라 X사의 외국항 운송화물을 접수, 선하증권을 발권, 화물운임을 징수함
베트남 기업B는 A를 통해 해운사 X를 이용 화물을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운송하며 운임은 100,000USD
A는 베트남 기업 선박 또는 외국선박을 임차하여 화물을 싱가포르 운송 하였으며 그 운임은 20,000USD
싱가포르에서 미국까지는 X의 선박으로 운송될 것임
→ 기업소득세 납부대상 매출액 : $100,000 - 20,000 = 80,000$

- 베트남으로부터 외국으로 가는 국제 물류(포워딩), 창고 서비스(지급자 불문) : 매출액 전부

※ 운송사 지급 국제운송비용 불포함

- 베트남으로부터 외국으로 가는 국제운송 서비스(지급자 불문) : 매출액 전부

외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의 운송서비스 :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아님
베트남으로부터 외국으로의 운송서비스 :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 재보험

· 외국으로의 재보험 가입 : 외국계약자가 수령하는 외국 재보험 가입비용 (재보험 커미션, 리베이트 포함)



- 외국으로부터의 재보험 인수 활동 : 외국계약자가 수령한 재보험 가입 수수료 금액.

- 증권 양도

- 증권 양도, 채권(면세대상 채권 제외), 예탁증서 등 : 양도시점에서의 증권, 채권, 예탁증서의 총매출액

- 이자율 스왑거래(Interest Swap Transaction)

은행 A는 10백만 USD금액을 대출하였고, 이자율은 고정금리 월 5.2%, 계약 기간은 2012.2.1~2015.2.1(3년), 지급기한은 반기납기간 시작일에 지급
A는 대출계약을 근거로, 외국은행 B와 이자스왑계약추진

- 계약기간 : 2012.2.1~2015.2.1(3년), 반기납, 시작일지급
- (SWAP) A가 B에게 지급할 변동이자율 Libor+0.25%
B는 A에게 5.2% 고정금리

기간	리보	적용이율		SWAP이익율		금액(th usd)	
		A이율	B이율	A	B	A	B
'12.2~'12.7	4.8	5.05	5.2		0.15		15
'12.8~'13.1	5.0	5.25		0.05		5	
'13.1~'13.7	4.9	5.15			0.05		5
'13.8~'14.1	4.95	5.20		-	-	-	-
'14.1~'14.7	4.9	5.15			0.05		5
'14.8~'15.1	5.05	5.30		0.10		10	

→ B의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

2012년(B가 수령하는 총금액) = 15-5 = 10th usd

2013년 : 5-0 = 5th usd

2014년 : 없음(A에게 5th usd지급해야함)

2015년 기초에 지급한다는 계약에 따라 상계지급 미발생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업종별 기업소득세 계산비율(%)

사 업 분 야	매출액에 대한 기업소득세계산비율
무역 : 베트남에서의 서비스관련배송, 물품·원료·물자· 기계·설비 공급 - 현지 수출입형식 모든 물품(임가공 제외) - DDP,DAP,DAT 인도조건 공급물품	1
서비스, 기계설비 리스, 보험, 시추선 리스	5
식당, 호텔, 카지노 등 관리서비스	10
선박, 항공기, 선박·항공기엔진, 부품의 리스	2
건설, 설치(원재료, 기계설비계약 포함여부상관없음)	2
제조, 기타사업, 운송(해운,항공)포함	2
외국으로의 증권, 재보험양도, 재보험 가입수수료	0.1
파생금융 서비스	2
대출이자	5
판권(Copyright)	10

- 두가지 이상이 통합된 거래 : 사업활동 별 기업소득세 계산 단, 가액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업종별 최고율 적용

□ 혼합법(공제방법 부가가치세 + 매출액비례 기업소득세)

- 요건 : 공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요건 중,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 (거주자), 183일 이상 조건 등 2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베트남 회계방식이 아닌 자율 회계방식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 절차 : 과세당국에 혼합법 적용신고 선 실시
- 납부방법 : 부가가치세는 공제법, 기업소득세는 고정비율법

< 혼합법 >

베트남 회계원칙(VAS)를 따르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방법으로 신고 가능할 수 있으나 세무조사RISK는 증가함



4

외국인계약자세제 유의사항

□ 조세조약 반영 신청

○ 사전적 조치사항

- 신청기한 : 외국인계약자세 신고기한⁴⁾ 전 15일 전까지
- 제출서류 : 비과세면제신청서, 거주자증명서(영사관인증), 외국인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계약서사본
- 처리기한 : 평균 2주내외 소요(경우에 따라 장기간소요)

< 주의 >

계약서명일에 기준하여 제출하여야하나 대금지급시점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베트남 과세당국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조세조약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 P.E를 구성하지 않는우리나라 기업은 반드시 계약 후 즉시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함

○ 사후구제 절차

- 신청기한 :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건
- 제출서류 : 환급신청서, 사전면제신청서류 등
- 신청인 : 직접할수 있으나 실무상 베트남 거래처에 위임
- 처리기한 :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

□ 계약내용의 분리

○ 계약내용의 분리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의 차이가 있음

- 외국인 계약자가 베트남 법인에 기계, 장비를 공급하면서 설치, 감독 등 용역을 함께제공하고 대금을 합하여 받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적용되는 사례

4) 계약서명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계약내용 분리에 따른 세율 차이

건설업의 베트남 진출(계약)방법에 따른 세율차이(예시)

1) 세분화

공급형태	부가세율(%)	법인세율(%)	합계(%)
건설	5	2	7
자문	5	5	10
건설감리	5	5	10
원재료, 장비기계	-	1	1

2) 원재료 공급 구분

공급형태	부가세율(%)	법인세율(%)	합계(%)
건설(자문, 건설감리 포함)	5	2	7
원재료, 장비기계	-	1	1

3) 통합

공급형태	부가세율(%)	법인세율(%)	합계(%)
건설(자문, 건설감리, 원재료, 장비기계 포함)	3	2	5

※ 각 대금을 적용하여 총 세액을 먼저 산출해 보아야 함
관련 계약서와 증빙 철저 보관(구분 근거)

□ 인도조건에 따른 외국인계약자세제

- 베트남 계약자의 위험부담에 따라 DDP, DAT, DAP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외국인계약자세제에 해당됨
- 일부 일본기업은 외국인계약자세제의 법망을 피하기위해 DDP등의 방법에서 EXW(공장인도)조건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고 있음
 - 기존 규칙에는 상품인도에 대해 “물품 판매에 부수되는 서비스”로 정하였으나 Circular 60에 따라 “물품 판매에 부수되는 서비스”에 DDP 등의 조건이 추가되면서 진출기업과세 급증



□ 신고, 납부방법 변경

- 하나의 계약에 대하여 일단 채택 신고 된 방법 변경불가
 - 계약 종료시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 납부
 -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 계약을 수정, 갱신하는 계약이 새로 체결된 경우 : 당초 방법에 따라 계속 납부
- 종료후 새로 계약 : 신고, 납부방법 변경가능
 - 신 계약에 대하여 3가지 중 하나를 선택가능
- 한 기업이 다수의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 통일
 - 하나의 계약에 대하여 공제신고방법, 혼합방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 하겠다고 등록하였다면 기타 여러 계약도 이에 따라 방법을 통일 하여야 함
- 유전, 가스전 탐사, 시추, 개발 및 채취 활동 추진을 위한 물품, 서비스를 공급
 - 등록증 발급 전 : 베트남 측 당사자가 원천징수
 - 등록증 발급 후 : 공제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 납세자등록증을 발급 전 발생 매입 부가가치세 : 공제불가능

□ 베트남 국세청 주요 질의응답

- 하자보등기간과 내용을 포함한 경우(OL3342)
 - 하자보등금액은 총계약금액과 분리할 수 없다고 여겨지나, 외국에서 하자보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외국인계약세제법리에 따라 면제됨
- 로열티가 포함된 기계장치(OL3748)
 - 기계장치를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포함하여 구매되었다면 소프트웨어 금액에 대하여 로열티로 10%로 원천징수해야함

제 3 장 세목별 조세제도

1

법인세

□ 2014년 주요 개정사항

1) 세율인하

- 2014년 1월 1일부터 현행 법인세율 25%를 22%로 인하
- 2016년부터 20%로 추가 인하
연간 매출 200억 VND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은 '13.7.1일부터 20% 적용
(단, 부동산, 자본이전, 사업이전, 국외사업득 분야제외)

2) 법인세 감면혜택

- 신규투자프로젝트이면서, 다음의 경우 2014년 이후 4년간 법인세 면제, 9년간 50%감면, 15년(조건충족시 30년) 10%
 - Economic zone, Hi-tech zone에서 신규투자
 - 하이테크산업으로 인정받은 산업발생
 - 제조업체(특소세대상, 천연자원개발업 제외)로 투자금액이 6조 VND를 초과하고 자본금이 3년 내 완납되며, 3년내 연매출 10조 VND초과(또는 고용기업 3,000명초과)하는 기업
- 산업공단에 대한 신규투자 : 2년간 법인세면제, 4년간 50%감면

3) 과세소득

- 베트남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계약자의 베트남 내 과세대상소득에 재화의 유통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 부동산 처분, 투자프로젝트부문매각, 투자참여권리매각(채굴권제외)로 인한 손실과 일반영업에서 일어난 손실 상계허용



4) 손금

- 광고선전비, 판촉비 산정비율 15%로 상향조정(당초 10%)
- 매출할인은 손금불산입금액에서 제외
- 법인세법 상 생산수율 정보의 사전등록의무 소멸
(재고감모손실에 따른 세무조사 위험 감소)
- 사업주 부담 자발적 연금기여금 손금인정(1인당 월 1백만VND)

□ 납세의무자

- 사업을 영위하는 베트남인(법인 및 개인사업자)
- 외국인투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단독투자법인, 합작법인, BCC 당사자, BT, etc)
- 외국인투자법에 근거하지는 않지만 베트남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JV Bank, Foreign bank branch 등)

□ 사업년도

- 원칙 : 역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예외 : 재무부장관의 승인 시 변경가능
※ 법인세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는 예외없음
- 최초, 최종 회계연도가 90일 미만인 경우 총 과세기간이 1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과세기간 또는 전 과세기간과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음

□ 과세소득의 계산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술개발준비금) * 세율
- 과세표준 = 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 이월결손금(5년)
- 과세소득 = 총수입(매출액 + 기타 소득) - 공제가능비용
※ 기타소득의 경우 세제혜택적용이 배제



□ 비과세 소득

- 농업기술사업소득
-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시험생산기간, 베트남에 최초로 적용되는 신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소득
- 연평균 고용인 20인 이상으로 장애인, 에이즈감염자, 치료중독자의 비율이 30%이상인 기업
- 탄소배출권 거래소득(신설)
- 사회경제적 특별취약지역의 개인 또는 기업에 이전되는 기술이전 소득(신설)

□ 손금가능비용

- 제품, 반제품 및 용역제공을 위한 원·부자재 및 연료비
- 신고된 임금, 급여 및 수당, 식대 등
- 퇴직금지급액 및 일정액의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
- 재무부 장관이 고시(Depreciation Law)한 감가상각율에 따라 영업활동 및 생산에 이용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기술자료, 특허권 또는 기타 권리를 이용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비용과 기술자문비용
- 관리비 및 판매관련 비용
- 지급이자(고시이자율 1.5배 이내)
- 일정한도내의 재고자산충당금/대손충당금 등 전입액
- 사회보장기금 납부액, 기업자산 보험료 등



- 위의 비용 합계액의 15%를 초과하지 않은 광고 및 판촉비 등(광고선전비, 접대비 등)
- 토지임대료, 관세, 면세물품관련 부가세, 각종 공과금 등

□ 손금불산입 비용

< 주의 >

수익창출과 연관되고 적합한 증빙서류를 갖춘 비용으로,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지 않은 금액은 손금인정
(중요) 2천만 VND이상 거래시 은행계좌이체의무 신설

- 세법규정에 위배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 1) 회사의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기숙사, 휴게실, 식당 등)
- 2) 적격한 서류 및 증빙없는 자산
- 3) 회사의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산
- 4) 9인승 이하의 승용차로서 취득원가 16억VND

- 개별노동계약서나 단체 노사협약서에 기술되지 않거나, 실제지불되지 않은 직원급여(가공인건비)
- 적정한 규정에 맞지않는 R&D충당금
 - ※ 세전소득의 10% 한도, 5년 내 70% 이상 목적 내 사용
- 퇴직급여충당금(실업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법인제외) 및 노동법상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된 퇴직급여
- 해외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배부된 본사 간접비용 중 법에 정한 기준을 초과한 부분(매출액 비율로 배분액 조정)
- 재고자산평가감, 대손충당금, 유가증권평가손실, 제품보증비용, 건설중 자산평가충당금 중 세법규정 위배된 부분
 - ※ 대손충당금 한도 : 6개월 초과 30%, 1년초과 50%, 2년 초과 70%, 3년 초과 100%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베트남 중앙은행 고시이율(약 9%)의 1.5배를 넘는 비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업무와의 관련성과 무관)
- 광고, 판매촉진료 등 총 손금인정비용의 15% 초과
- 외화표시부채에서 기인하지 않은 외화환산손실
- 교육, 보건, 자연재해, 빈민자선사업용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부금
- 행정벌과금, 가산세, 지연납부가산금
- 주식의 발행, 구입, 판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특정비용
- 생산차질에 따른 손실(발생원인과는 상관없음)
- 관련증빙이 없는 비용 등
- 특별한 경우의 지급이자 : 자본금 납입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차입금을 사용한 경우에 차입금 이자
- 자본금 미출자 해당금액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가 부인됨,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차입금에 대한 이자
- 영업무관 비용 (예 : 배우자 관련 비용 등)
- Expense covered by other funds(Fund를 조성해서 사용해야 될 성격으로 유치원과 같은 종업원복지시설 이 예)
- 연 5백만 VND 이상의 피복비(현금지급 가능)
- 여비 한도초과분(일 30만 VND)
- 현금 및 예금, 매출채권 등 자산과목의 환산에서 발생한 외화환산손익은 각각 손금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함



□ 세율

- 투자형태, 지역 및 업종 등에 따라 일반세율, 우대세율 및 기타세율
- 일반세율 : 22%
- 우대세율 : 20%, 15%, 10%

세율	적용대상	기간	과세감면	우대세율
20%	IZ에 새로설립된 서비스 기업	개시일로부터 10년	2년	이후 6년간 50%
15%	EPZ에 새로 설립된 서비스기업 IZ에 새로설립된 제조 기업	개시일로부터 12년	3년	이후 7년간 50%
10%	EPZ,IZ새로 설립된 인프라기업 수출제조업체(EPZ, IZ 불문)	개시일로부터 15년	4년	이후 7년간 50%

※ 20% 우대세율은 '16년 이후 17%

- 석유 및 천연가스 사업의 경우 32%~50% 세율적용

< 사례 >

한국○○공사는 베트남 광구에서 ○○개발사업을 영위하며, 해당 소득의 50%를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나,(자원개발) 조특법 상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가 과세 표준에서 국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까지이며, 국내사업부문의 경우 결손이고 해외사업이 흑자인 경우 국내세율보다 국외세율이 월등히 높아 이월외국납부세액의 누적으로 국내 사업이 흑자로 전환되더라도 상당기간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됨

→ 이는 고세율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 공통된 현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의 변경이 필요함

□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 매 분기별 가결산을 수행, 익월 3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 회계연도 종료후 90일 이내 확정신고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이월결손금(Loss Carried Forward)

- 5년간 공제가능

□ 지분양도 세금(Capital Assignment Tax)

-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가 보유지분을 다른 외국인투자자에게 매각할 경우 해당 매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의 22%를 세금으로 납부
- 분리과세, 양도손실인 경우 동일기간의 일반사업과 상계가능

< 비교 (vs 韓) >

한-베 조세조약에 따라 부동산과다법인이 아닌 경우(50% 이상) 조세조약에 의한 면제신청 가능

2 부가가치세

□ 2014년 주요 개정사항

- 1) 수출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요건 강화
 - '13년까지 영세율 적용을 위한 요건은 고정사업장의 미존재
 - 용역이 국외에서 소비되어야 영세율적용(추가요건)
 - ※ 해당용역이 베트남에서 소비되었다고 보고 과세할 가능성이 높음
- 2) 매입 부가세 신고기간 6개월 제한 삭제(매입누락신고)
 - 세무조사전까지 추가 매입부가가치세를 신고가능
- 3) 무료사은품에 대한 통지의무 명확화
 - 홍보목적으로 무료 배포되는 상품, 서비스는 산업무역부서(Department of Industry and trade)에 해당 홍보계획을 등록할 경우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 하되 과세표준을 0으로 할 수 있음
 - 적법하게 통지되지 않을 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매출부가세부과



4) 부가가치세 신고방식 적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0억VND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기존의 공제법(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를 적용하도록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직접법(회사의 부가가치창출액에 일정률 계산)을 적용하여 납부
- 석유/가스부문을에서 영업하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인 계약자는 외국인계약세납부시 원천징수 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되는 경우 반드시 공제법을 적용
 - ※ 일반세율 적용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증가효과
-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최초 고정자산 구입시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액이 없으므로 예상매출액비율에 따라 일시적으로 공제가 가능

5) 매입부가세 환급 신청에 대한 새로운 규정

- 최소한 1년 이상 누적 매입부가세 환급액이 발생하면 환급 청구를 할 수 있으며(기존 3개월), 신설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기간동안 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 금액의 최소액이 기존 2억VND에서 3억VND로 증가

□ 납세의무자

- VAT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을 생산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개인 및 조직으로 외국인의 경우 법적실체나 주소나 거소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함

< 시사점 >

* 고정사업장과 부가가치세 논란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급장소”가 필수적으로 있어야하고,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의 성립여부와는 별개의 논리로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여부 인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요건을 검토해야함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가 어려움(애플마켓 등)

베트남 법은 외국실체의 경우 법적실체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도록 국내법상 규정하고 있어 보다 폭넓은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수의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의 부가가치세 탈루시도에 대하여 법령개정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



□ 과세대상 : 열거되지 않은 재화나 용역 모두

Nontaxable Goods & Services(Circular 65)

- 미가공 또는 단순 1차가공(건조, 세척, 염장, 냉동 등) 농, 축, 수, 임산물
- 정부승인 사업자의 동물 종자번식, 식물의 종묘생산
- 관개 및 하수
- 소금
- 정부소유 국영주택의 판매
- 생명보험, 금융서비스(신용공여, 증권거래, 자본투자, 파생상품)
- 의료용역(가축 및 동물의료 포함), 시약, 예방, 출산, 재활, 간병
- 공공서비스(위생, 수도, 하수, 가로등, 가로수 및 화단, 장례)
- 법률에 정하는 교육 및 직업교육
- 정부소유 라디오 및 TV방송 서비스
- 신문, 잡지, 출판
- 버스운송
- 국방을 위한 무기
- 기계장치 및 부품(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으로 과학적 연구나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수요자가 직접수입하는 것)
- 재무부에서 승인한 비상환 조건의 원조물품 수입
- 금괴(Bar 또는 Ingot 형태로 가공되지 않은 것)
- 수출된 가공되지 않은 천연자원, 광물
- 월소득이 최저임금 수준 이하인 개인이 판매하는 재화용역
- 수상이 정하는 면세점에서 거래되는 면세재화



□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 매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1) 원칙 : 재화·용역의 과세전 가격
- 2) 특소세, 환경보호세 부과되는 재화나 용역 : 특소세, 환경보호세는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가격(개정)
- 3) 할부, 연불지급조건의 경우 할부이자를 제외한 가격
- 4) 임가공 재화의 경우 임가공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임가공 수수료로 임가공보수, 연료비, 부재료비, 기타 임가공경비로 구분
- 5) 부동산 거래 : 부동산양도가액 - 토지가액(공제허용)
- 6) 자가소비 : 중간재사용은 공급으로 보지않음, 최종소비는 판매가
- 7) 건설공사 : 자재공급하는 경우 총액, 공급하지 않는 경우 용역만 과세
- 8) 국내의 동시제공 서비스 : 계약금액 또는 발생비용 안분
- 9) 수입재화 : 관세과세가격 + 관세 + 특소세 + 환경보호세

□ 세율(3가지 단일 세율)

구 분	세 율
수출되는 재화, 용역 예외) 기술 및 지적재산권 해외이전, 해외제공 금융용역, 미가공 천연 자원, 자동차 및 연료 무관세지역판매, 무관세지역에 제공되는 용역, 공장 또는 창고의 임대	0%
산업용수 및 생활용수(병입 음료제외) 비료, 사료 관개시설, 농경지개량 1차가공 천연고무, 1차가공 송진 설탕 및 부산물 특수농기계 의료장비 및 의료기기 문화, 스포츠, 공연, 전시회, 영화, 영화수입배급 어린이, 장난감, 면세대상이 아닌 서적	5%
위 두가지 세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



□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1) 매입세액공제법(Credit Method)

○ 적용요건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연간 10억VND이상사업장
- 공제방식으로 자진신고한 특정사업장

○ 산출세액 : 매출세액 - (공제가능)매입세액

○ 공제가능 매입세액

- 국내매입 : 세금계산서 기준
- 수입부가세 :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관세납부일 기준으로 수입부가세의 공제금액이 결정
- 외국인계약자세로 원천징수된 부가가치세 금액 : 공제대상

※ 매입공제대상

- 1) 원칙 : 매입세액 전액(정상적 감모 등 포함)
- 2) 안분계산 : 공통사용제화는 과세재화의 매출액비율로 안분
- 3) 고정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은 전액공제가능(국방무기제조, 금융, 병원, 학교사용은 제외)
- 4)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 종업원 공통복지시설 전액공제
- 5) 9인승 이하 16억VND초과 자동차 매입세액은 불공제
- 6) 판매목적 광고, 선물, 프로모션, 기부는 공제가능
- 7) 매입세액 공제기간 : '14년부터 제한없음(기존 6개월)
- 8) 부가가치세 포함 2천만 VND의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불공제
- 9) 필요적기재사항 누락된 세금계산서 불공제
- 10)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연관되지 않는 매입세액 불공제
- 11) 직접법에서 매입세액공제법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재화나 용역의 구매일이 변경신고 이전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변경신고일 이후라도 매입세액 불공제



2) 직접법(Direct Method)

- 적용요건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연간 10억VND미만 사업장
 - 개인 및 가내사업자
 - 적합한 장부기장을 유지하고 않고 있는 사업자 및 해외 기관이나 외국인이 투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투자형태로 영업활동을 수행할 때
 - 금, 은, 보석을 매매하는 사업자
- 산출세액 : 판매된 재화, 용역의 부가가치 * 세율
 - 한번 선택한 부가가치세 방식은 2년간 유지해야 함

□ 신고기간 : 매 익월 20일 이내

□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 매입세액공제법을 적용한 경우에만 환급가능
- 환급신청은 별도로 해야함
- 수출기업의 경우 환급금액이 매월 또는 매 3개월 3억VND를 초과하는 경우 매월 또는 매3개월 환급이 가능하며, 매월 신청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총 공제가능 매입세액 중 수출비율에 따라 환급
- 일반기업은 매월 또는 매분기말 환급가능금액이 12개월이상 존재할 경우 1년 단위로 환급
- 신설법인은 건설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 투입된 고정자산 매입세액이 3억VND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가능



< 주의사항 >

- 1) 세무조사와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세무조사가 병행되므로 일시적 환급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보다 차월 이후 매입세액 공제가 합리적
- 2) 실무적으로 환급신청시 몇 %의 underymoney를 요구 주의요망
※ underymoney : 속행료 등 비공식적 자금
- 3) 수출대금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동금액의 비율만큼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함
- 4) 세무서에서 사전인세, 납세자가 직접인쇄한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필수항목이 기재되어야함
- 5)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우리나라 세법에 비해 폭넓고 과세요건도 간단하므로 우리나라의 기업의 거의 모든거래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

3 **개인소득세**

□ 거주자 판정

- 베트남에서의 직전 1년간 누적체류기간이 182일 이내인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되며 베트남에서의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하여 20%의 단일세율(근로소득)로 과세
- 베트남에서의 직전 1년간 누적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이거나 조세목적 상 영구거주자인 경우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5%에서 35%까지의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
- 베트남 입국 후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베트남에 거주하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
- 과세소득은 고용계약서, 소득영수증 또는 베트남 또는 외국에서발생한 소득에 대한 관련 서류에 의하여 계산



- 요청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소득관련 증빙을 제출
 - ※ 183일 이상 거소를 가지는 경우 타국가 거주인임을 소명해야함
- 한 - 베 조세조약 제4조(Tie brake Rule)
 - 1) 항구적 주거
 -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3) 일상적 거소
 - 4) 국민
 - 5) 상호합의

< 비교 (vs 韓) >

소득세법 제1조의 2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
(거소를 둔 개인 :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

□ 소득세 면제대상 외국인

- 외교관 및 영사관원(조세조약 27조)
- 기타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 과세연도 : 1월1일부터 12월 31일

□ 과세대상소득

1) 근로소득

- 임금, 급여, 수당, 상여금 등을 더한 금액(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현금 또는 현물 등 모든 고용소득)
- 수당 및 보조금(사회봉사, 방위수당, 위험물 수당, 산재수당, 육아수당, 실업수당, 외국인의 베트남 근무를 위한 주거이전을 위해 지급되는 1회의 수당 제외)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고용인으로부터 받는 금전적, 비금전적 편익

※ 주택임차료의 급여가산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주택을 임차해 줄 경우 임차료와 급여의 15% 중 작은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함

- 이사회, 주주총회 등 경영자 모임에 참석하고 받는 보수
- 생명보험, 퇴직보험 등 강제적 보험이 아닌 임의보험료

2) 비정규소득

- 자본투자에 따른 이자, 배당금
- 부동산 양도소득
- 외국의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베트남에 거주하는 자에게 발송된 선물 또는 기부형태의 현금 및 현물
- 기술이전, 건축, 엔지니어링 디자인, 산업디자인, 상표, 로열티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
- 문화 및 예술작품등과 관련된 로열티, 복권당첨금 등
- 비과세대상소득
- 위험한 질병에 대한 종업원과 그 가족의 검사치료비(개정)
- 시간외근무수당 할증수당
- 외국인 거주자의 1회의 이주비용
- 외국인거주자/해외근로베트남인의 매년 1회의 항공료
- 베트남 내 소재한 초등학교이상 고등학교이하 자녀학비
- 직원교육훈련비
- 석유, 자원채굴 등 산업군에서 주기적 교대근무식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업무항공료
- 개인 또는 재산보험증권에 의한 보험금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
-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외화(국외거주 베트남인)



- 승인된 비영리 자선단체 및 구호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 기타 개인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비과세 수당

□ 과세소득의 계산

- 근로소득, 자본투자소득 : 과세소득 = 수입금액
- 사업소득
 과세소득 : 사업수익금액 - 공제가능 필요경비
 ※ 공동사업의 경우 약정비율에 따라 안분
- 무기장 사업소득 : 과세당국이 정하는 율로 추계
- 자본양도,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소득 : 처분가액 - 구입원가 - 처분비용
- 복권, 로열티, 상속 및 수증소득 : 수입금액 - 10,000,000VND

□ 과세표준의 계산

- 근로소득, 사업소득자
 과세표준 = 과세소득 - 기본공제(월 9백만 VND) - 부양가족공제(월 3.6백만 VND) - 의무보험료 - 퇴직연금(월1백만 VND) - 기부금
 ※ 부양가족공제 : 18세 이하 자녀, 근로능력없는 배우자, 부모
- 자본양도, 부동산 양도소득 : 과세표준 = 과세소득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세율

1) 사업소득, 근로소득

구분	과세표준	세율
1	60백만 VND이하(월 5백만 VND)	5%
2	60백만 VND초과~120백만VND이하(월 10백만 VND)	10%
3	120백만 VND초과~216백만VND이하(월 18백만 VND)	15%
4	216백만 VND초과~384백만VND이하(월 32백만 VND)	20%
5	384백만 VND초과~624백만VND이하(월 52백만 VND)	25%
6	624백만 VND초과~960백만VND이하(월 80백만 VND)	30%
7	960백만 VND 초과	35%

2) 기타소득

소득의 종류	세율
자본투자	5%
로열티 등 지적재산권	5%
복권 및 상금	10%
상속 및 수증	10%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부동산 양도소득 : 과세표준 25%, 처분가액 2% 중 택 1
- 지분양도소득 : 과세표준 20%, 처분가액 0.1% 중 택 1

□ 비거주자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소득별 단일세율)

- 사업소득 1~5%
 - 상품유통사업 : 과세대상 수입금액 * 1%
 - 서비스업 : 과세대상 수입금액 * 5%
 - 제조, 건설, 운송 및 기타 : 과세대상 수입금액 * 2%



- 근로소득 20% (일부 10%)
 - 비거주자가 베트남에서 받은 급여 및 임금 * 20%
- 이자, 배당소득, 프랜차이즈/로열티 : 5%
- 유가증권 및 유한회사 지분양도 : 매각대금 0.1%
- 부동산 양도 : 매각대금 2%
- 상속, 증여소득 : 10%

□ 신고 및 납부

- 근로소득 원천징수 : 매월 20일 또는 매분기 30일

※ 원천징수

- 1) 분기신고가능한 경우
원천징수 세액이 월 5천만VND 미만, VAT를 분기별 신고하는 법인
- 2) 10% 원천징수
월 2백만VND이상을 지급하는 3개월 미만의 노동계약, 노동계약없는 경우

- 연말정산 : 다음해 90일 이내(세액 확정)
- 부동산, 양도소득, 상속 및 수증소득 : 자진신고납부

□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구 분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합 계
근로자	8%	1.5%	1%	10.5%
고용인	18%	3%	1%	22%



□ 정의

-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건, 제품 사용시 부과하는 관세 (LAW 57/2010/QH12, '12.1.1일부터 시행)

□ 적용대상

- 에탄올을 제외한 휘발류
- 증기연료, 디젤유, 석유, 연료유, 윤활유, 기름
- 석탄, 갈탄, 기름탄
- 하이드로 클로로 탄화불소 용액(오존층 파괴제품)
- 관세를 적용받는 대상에 속한 나일론 봉투
- 제추제, 흰개미약, 임산물보관제, 살균제

□ 적용제외대상

- 베트남에서 수입,수출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물건
- 기한이 임시적이고 수입, 재수출되는 물건

□ 납세자

- 물건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
- 조직 등이 소량의 석탄을 구입하여도 환경보호세를 납부한 구입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조직 등

□ 계산시점

- 판매, 교환, 증여용 생산 물건 : 물건사용권, 지적재산권 이전시점



- 내부 소비용 생산물건 : 물건을 사용에 들어가는 시점
- 수입물건 : 관세신고서 등록시점
- 판매용 생산(수입) 유류 : 휘발류, 유류경영업체가 판매시작

□ 세율(절대금액)

물 건	계산단위	세액(VND)
휘발류(에탄올제외)	4,000L	1,000
증기연료	3,000L	1,000
디젤유	2,000L	500
석유	2,000L	300
연료유	2,000L	300
윤활유	2,000L	300
기름	2,000Kg	300
갈탄	30,000Ton	10,000
Antraxit탄	50,000Ton	20,000
기름탄	30,000Ton	10,000
다른석탄	30,000Ton	10,000
HCFC용액	5,000Kg	1,000
플라스틱	Kg	40,000
나일론봉투	50,000Kg	30,000
제초제	2,000Kg	500
흰개미약	3,000Kg	1,000
임산물 보관제	3,000Kg	1,000
창고살균제	3,000Kg	1,000

※ 플라스틱백의 경우 시가보다 세금이 더커 업계 애로사항

□ 세금납부 및 환급

- 생산물건 또는 수입물건을 위한 환경보호세는 한번만 납부
- 출입국 창고에 관세기관의 보관을 받아 재수출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베트남에서 대리점을 통해 외국으로 분배되는 물건
- 임시수입, 재수출 물건경영방식에 따라 재수출을 하도록 임시적으로 수입되는 물건
- 수입자가 오국으로 재수출하는 수입물건
- 제품소개전시회, 박람회참여하도록 임시수입되는 물건

5 특별소비세(SST)

□ 부과대상 : 특정 재화의 생산이나 수입, 특정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비세

※ 특소세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의 과세SST대상에도 해당됨

※ 특별소비세 전격 인상추진

- 술,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15년 하반기부터 특별소비세 인상
- 탄산음료도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0% 특소세추진 (영국,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등은 이미 시행중)
 - 금년도 채택결과에 따라 '15년 7월 1일 효력

베트남 1위 술, 담배 브랜드는 국내브랜드로 시행여부에 예 RATESSSS

※ 자동차 업계 불만

- 베트남 제조차량은 생산비용, 보험료, 운송비, 유통비, A/S비용 뿐아니라 제조사 매출액에도 적용되고 있는 반면 수입차량에 대한 특소세는 유통업자의 매출액을 제외한 수입세에만 적용
- 오히려, 수입차가 베트남 제조차량보다 동급 5%가량 싼

□ 대리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특소세 계산의 최소가격을 대리인 판매금액의 90%로 설정하는 등 다양한 특소세 회피 방지규정



□ 특소세율표

품목/서비스	세 율	품목/서비스	세 율
담배	65	부적	70
증류주, 와인	25-50	디스코텍	40
맥주	50	마사지, 가라오케	30
24인승이하 자동차	20	카지노, 잭팟	30
비행기, 선박	30	사행성게임	30
에어컨, 석유	10	골프	20
카드	40	복권	15

6 기타세 

□ 천연자원세(Natural Resources Tax)

- 천연자원세는 석유, 광물, 임산물, 해산물 및 생수 등 베트남의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군에 부과
- 천연자원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 단위당 특정 과세 가격을 적용합니다.
- 석유, 천연가스 및 석탄 가스 : 일평균 생산량에 따른 누진세율

□ 재산세(Property Taxes)

- 해외 투자자의 토지사용권 임차료(자본으로 현물출자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주택과 아파트의 소유자는 법에 의해 농업 외 토지사용에 대한 세법에 따른 토지세를 지불(0.03%에서 0.15% 사이의 누진세)



- 수입관세(대부분 WTO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사)
 - 일반 세율
 - 특혜관세율(Preferential rates) : 최혜국지위
 - 특별우대관세율(Special Preferential rates)
 - 베트남과 특별우대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한하여 적용
 - 해당 국가 : ASEAN, 일본, 중국, 인도, 대한민국, 호주 및 뉴질랜드
 - 특혜관세율이나 특별우대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수입 재화는 적절한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
 - 특혜관세율처리나 특혜관세율적용 대상이 아닌 국가의 경우 일반 관세율 (특혜관세율에 50% 가산)적용
 - 관세가격 : 거래가격("WTO")



III

투자 관련 참고자료



1.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규정
2. 2014년 신(新)투자법
개정



1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규정

□ 관련규정

○ Circular 205/2013/TT-BTC(2013.12.24)

- 타방국과 체결한 사업계약의 존재목적이 단순히 조세조약상 조세감면/ 면제만을 적용받기 위한 것이거나, 타방국에 거주한 소득의 수령자가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 조세조약 적용 배제
- 기존 Circular 133/2004는 일반적 규정들만 포함할 뿐 금번 개정은 조세 회피방지 규정을 구체적 명문화한 것으로 이전가격조사와 함께 향후 주요 조사항목이 될 것으로 전망

○ 판단요소

-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 중 50%를 초과한 소득을 타방국 거주한 수령자가 제3국에 주재하는 회사 또는 개인에게 12개월 이내 지급
- 실재적 경제활동이 거의 없거나 전무한 경우
- 소득과 관련한 영향력을 가지거나 위험에 관여되지 않은 경우
- Back to back 계약(원계약과 대응하는 재하청 계약)
- 수령자 거주지국의 소득세율이 10% 미만인 경우
- 타방국에서 실제 경제활동에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 대리인, 중개인

< 비교 (vs 韓)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규정 有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판결[2012구합10680(2013.2.8)]에서 실질과세 적용의 핵심적 징표를 제시

1. 명목상의 행위주체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결여 및 실질적인 계산과 활동은 모두 배후의 실질적인 행위주체가 한 것 인지
2.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주로 조세회피 목적인지



2 2014년 신 (新)투자법 개정

□ 관련규정

- Circular59/2005/QH11, 2006.7월 발효(최초의 통합투자법)
 - '07년 1월 베트남의 WTO가입을 계기로 세계경제에 편입하기 위해 내국인과 외국인간 차별을 최소화
- 외국인투자촉진, 추가적시장개방을 목표로 '14년 기존의 통합투자법을 대신 가칭 신(新)투자법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15년 7월 시행

□ 신 투자법과 기존 투자법의 주요 차이

구 분	기존 투자법	2014 신(新) 투자법
외국인투자 정 의	1%	51% 이상 지분투자 → 국영기업 민영화시 49% 지분참여 가능하게 됨
직접투자	단독투자, 합작투자, 사업협력계약(BTC) 등	주식회사 등 기타 투자형태 추가
간접투자	-	재정지원, 회사지분취득, 기업합병 및 인수, 주식취득, 채권취득, 투자 펀드취득 등 간접투자 허용 → M&A 등 적극권장
세금우대 조 항	기술이전관련 면제없음	기술이전소득 세금면제
관세면제	투자고정자산에만 면제규정	설비, 원부자재 등으로 확대
토지사용 기 간	토지사용기간이 명시안됨 (의정서에 명시)	50년 (특별프로젝트 70년)
토 지 사 용 료	BOT, BTO, BO형태 투자, 열악지역투자만 감면가능 (투자형태에 따라)	투자장려분야 투자시 토지 무상사용 및 인하가능 (투자형태보다 분야중시)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구 분	기존 투자법	2014 신(新) 투자법
투자단지	공업단지, 가공단지	공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술단지, 가공단지, 전통공예단지
원 자 재 구 매	장비, 차량, 원부자재구입시 베트남 생산제품 우선구매	의무조항 해제
투 자 금 회 수	제3자 매각, 증액 가능	감액기준 추가
투자자산 보 장	투자자산의 정부편입시 보상가격 명시없음	시장가격으로 보상
단독투자	투자업종 제한 및 합작투자만 허용	무역, 유통투자가능 100% 단독투자가능 취급 업종 제한 없음
청산조건	투자승인기간 종료, 부도시 정부가 청산가능	투자자 자의로 투자 종료
투자등록	등록처명시되지 않음 30일 소요	등록처 명시 3,000억 동 이하이며 조건부 투자대상이 아닌 경우 15일 이내 * 투자허가서 폐지
투자심사	등록처명시되지 않음 45일 소요	등록처 명시 3,000억 동 이상 투자심사 30일~45일 이내 처리



IV

부록



1. 베트남 개황
2. 이전가격 보고서식
3. 베트남 주요 웹사이트
4. 참고문헌(웹사이트)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1 베트남 개황

□ 일반 개황

국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수도	하노이 (인구 700만명, 2012년 잠정)
위치	인도차이나 반도 중부에 위치, 중국·라오스·캄보디아와 접경
면적	33만 341km ² (한반도의 약 1.5배)
기후	북부는 아열대성, 남부는 열대몬순 · 연평균 기온 : 24.1℃ · 습도 : 월평균 83% · 연평균 강우량 : 2,151mm (한국보다 2.4배 많음)
인구	8,878만 명 (2012년 잠정)
민족	베트남족 89%, 타이·므엥·크메르 등 53개 소수민족, 화교(약 100만명)
언어	베트남어(공용어)
종교	불교 약 1,000만명, 카톨릭 약 550만명, 개신교 약 100만명 등

□ 정치

정부형태	사회주의 공화제(공산당이 유일 정당)
주요인사	· 당서기장 : 응웬 푸 쯡 (Nguyen Phu Trong) · 국가주석 : 쩌엥 떤 상 (Truong Tan Sang)
독립일	1945년 9월 2일
행정구역	5개 직할시와 58개 성으로 구성
주요도시	호치민시(775만명), 하노이시(700만명), 하이퐁시(187만명),



□ 경제

국내총생산(1인당)	1,381억불(1,528불)
수출/수입	1,108억불/1,116억불
경제성장률	5.02%
화폐단위	베트남동(VND) \$1 = 약 20,000 VND

□ 역사

고대국가 및 중국 복속기	「흥」家の 반랑국(BC 690년) 등 고대국가형성 /중국에 병합(BC 111) → AD 972년 독립
전통왕조시대	전기 「레」왕조 → 「리」왕조 → 「쩐」왕조 → 후기 「레」왕조 → 「찡」·「응웬」家간 남북분립기 → 「응웬」왕조(AD 1802-1859)
佛 植民시대 /對美 항쟁기	1859년 佛 사이공 점령(1883년 佛의 보호국) 1940년 일본군 진주 및 1945년 일본군 항복후 「호치민」 독립 선언 1954년 佛 항복, 남북 분단
통 베 트 남 시 대	1973년 미군 철수 및 1975년 베트남 공산화 - 1976년 남북통일 총선거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 (7.2) 및 1977년 유엔 가입 80년대 초반 신경제정책 추진 ⇒ 성과미흡 - 산업기반 미비, 서방국가의 경제 제재, 대외 불개방 등이 원인 1986년 개혁·개방의 “도이모이”(쇄신)정책 추진 - 시장경제요소 도입과 대외 개방 - 중국('91)·미국('95)과 수교(現 167개 국가와 수교) - ASEAN 가입('95), APEC 가입('98) - ASEM 정상회의('04), APEC 정상회의 주최('06) - 유엔안보리 비상임 이사국('08) - ASEAN 정상회의 의장국('10)

□ 문화

○ 음식문화

- 베트남 요리는 담백한 맛이 나는 요리가 많아 우리의 입맛에 맞는 요리 많음
- 주식은 “안남미”로 끈기가 적고 푸석푸석하며, 바다와 근접하여 풍부한 해산물을 맛 볼 수 있음
- 펴(Pho) : 쌀가루로 만든 베트남의 대표적인 국수
- 컴(Com dia) : 맨밥에 고기, 해산물, 야채 등을 얹어 먹음
- 짜쵸(Cha gio) : 다진 고기, 야채, 당면 등을 라이스페이퍼에 싸서 기름에 튀긴 요리
- 쿠오장무오이(Cua rang muoi) : 게를 통째로 튀긴 요리



○ 기호식품(베트남 3대 기호품 : 담배, 맥주, 커피)

- 담배 : 한국과 예절 다름. 아버지와 아들이 맛담배를 피우고 학생이 선생님에게 담배를 권하기도 함
- 맥주 : 맥주를 가장 즐기며 주량이 매우 센 편이어서 보통 모임에는 맥주를 박스채 갖다 놓고 마심 (첨잔문화)
- 커피 : 아시아에서 제2위의 커피 수출국.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주로 ICE 커피를 즐김



□ 베트남인들의 4대 가치 체계

○ 가족에 대한 헌신(Allegiance to the family)

- 가족이 베트남 사회의 중심축으로서 자식의 효도를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간주



-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해 하며, 자신을 희생하여 가족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고 노령 부모를 돌보도록 교육
 - 개인의 불미스러운 행동이 사회에서 가족·조상 전체에 대한 비난, 미덕과 성공은 가족명예와 자존심으로 귀결
- 좋은 평판이 중요(Concept of good reputation)
- 체면 잃는 것은 베트남의 공동체적 사회에서 치명적 타격
 - 빈부에 관계없이 개인 평판에 따라 사회적 위상이 좌우
 - 생존시는 물론 사후에도 좋은 평판을 가질려는 여망
- 지식·배움에 대한 열망(Love of learning)
- 지식과 미덕을 갖춘 자를 가장 이상적인 사람으로 간주
 - 지식·교육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갖고 있어 교육을 많이 받은 자들이 높은 위상 보유
- 나이·신분·위치적 선임자 존경(Concept of respect)
- 가정에서는 부모, 형, 누나, 친척 연장자를 존경하고, 말과 행동에서 조심하고 순종하는 태도
 - 사회에서는 연장자, 교사, 성직자, 감독자, 고용주, 상위직에 대해 존경
 - 영웅적 행동을 했거나, 많이 배우고 미덕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 특별히 존경
- 베트남의 문화적 관습 및 상담시 유의사항
- 자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고 유교적 관습을 중요시
 - 외국인과의 상거래시 매우 신중하나 계약을 자주 변경하는 편
- 대화예절
- 대화시 상대방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 재차 확인하는 대신 미소를 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 ☞ 감정을 숨기기 위해 짜증나거나 화가 날 때에도 미소를 짓는 등 자칫 외국인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대부분 자존심이 무척 강하므로 비방이나 무시하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시골·농촌 마을 방문시 가난한 모습에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유의

□ 선물, 약속, 식사

- 거래 상담을 위한 회의는 보통 자기 사무실에서 편안한 분위기 아래 진행하기를 원하고 상대방의 작은 선물에도 매우 좋아하는 경향
- 상대방에게 라이터를 선물할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복이 남에게 이전된다고 믿고 있으므로 주의
- 관공서 공무원들은 근무시간 외 업무연락을 매우 싫어하므로 가급적 점심시간이나 일과시간이 끝나기 1시간 전에는 상담을 자제
- 더운 날씨로 인해 오후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업체 방문시에는 가능한 오전을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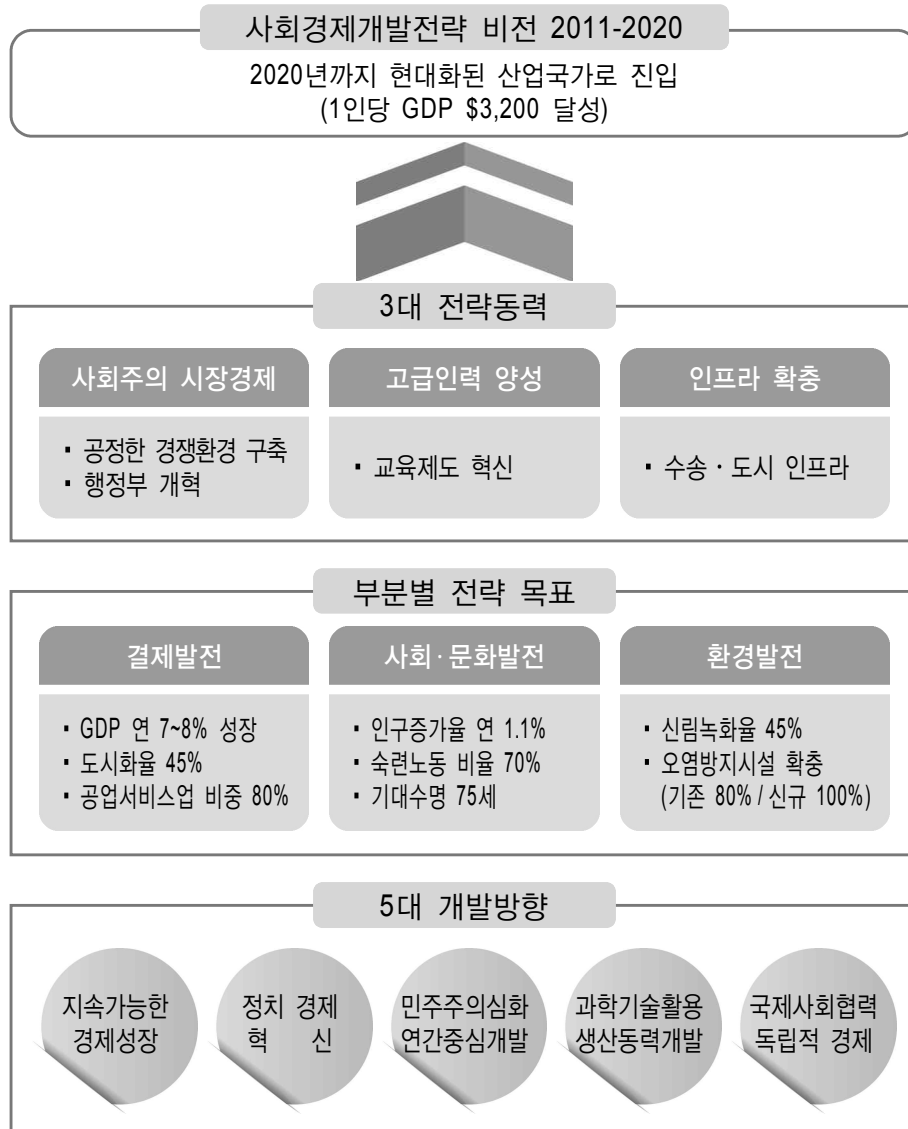
식사에절

- 젓가락으로 밥그릇을 치지 않도록 주의
-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씹어야 하며, 한 번에 많은 음식을 입속에 넣으면 불경스럽다고 인식
- 상대방이 음식을 집어 줄 경우 밥그릇으로 받는 것이 예의
- 이쑤시개는 3-4개를 주어야 함

□ 금기사항

- 숫자 13은 불행, 숫자 5는 위험, 15·25 등 5로 끝나면 싫어함
- 아침에 남의 어깨를 만지면 안되며, 한쪽 어깨를 칠 경우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대편 어깨도 때릴 필요

□ 베트남 경제정책 방향



○ 5개년 사회 · 경제개발계획(2011-2015)

- 베트남 정부는 경제 구조 개선 및 2020년 산업국가 달성을 위해 금융, 국영기업, 사기업, 무역 및 공공재정 개혁을 위한 중장기 개혁정책을 수립, 추진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2006년 제10차 전당대회에서 2020년까지 베트남의 산업화 및 현대화를 목표로 설정
- 2011년 1월 제11차 전당대회에서 2011-2020년 경제사회 개발 전략 및 5개년 개발계획 채택

○ 주요 목표

- 경제 분야
 - 경제성장률 7.5 - 8% 달성
 - 생산성 경제성장 기여도 35%
 - 1인당 GDP 2,100미불
 - GDP 구조 1차산업 19%, 2차산업 40.7%, 3차산업 40.3%
 - GDP 첨단제품 비중 45%
 - 산업생산 제조업 비중 40%
 - 에너지 손실/GDP 연간 2.3% 감축
 - 물가안정
 - 노동생산성 2010년 대비 1.5배
 - 수출 연간 12.1% 증가
 - 국가재정의 자본조달비율 25.1%-25.4%로 감소
 - 총사회투자비율 GDP 대비 41.5%
- 교육훈련, 과학기술, 사회 분야
 - 2015년 숙련공 비율 55%
 - 2015년까지 첨단 제품 30%
 - 발명 특허 150% 증가
 - 기술혁신비율 50% 달성
 - 출산율 연간 0.25% 감소구증가율 1% 이하
 - 평균수명 74세
 - 1만 명 당 의사 8명, 30병상



- 2011-2015년 국내고용 800만 명, 해외고용 45만 명
- 2015년 도시실업률 4%로 감소
- 빈곤가구율 연간 2-3% 감소
- 실질임금 2010년의 2-2.5배 달성
- 인간개발지수 중상급
- 도시 1인당거주면적 21.5m²
- 영구주택비율 62.5%

○ 분야별 주요 내용

- 산업·건설

- 산업구조 개선 : Quality, Competitiveness, Modernization
- 원자재 조달능력 강화 : 섬유·의류, 자동차, 오토바이, 선박 등
- 산업인프라 강화 : 석탄발전소, 시멘트, 중화학 공장
- 건설산업 지속 발전 : 대규모 국책사업, 하이테크 프로젝트 지속
- 도시 인프라 확대 : 교통, 수도, 위생, 폐기물 처리관련 시설 확대

- 서비스업

- 효율화·고부가가치 추구, 수출지향산업 육성, 중간재 수입 비중 감소
- 서비스 부문 연간 8-9% 성장, 2015년 GDP 비중 40-41%, 2015년 관광객 700만 명 유치
- 6대 중점개발 분야 : 이동통신, 교육, 비즈니스, 금융, 교통, 관광 분야 집중 육성
- 국제규범에 따른 제도 정책 개선

- 수출입

- 무역수지 적자 개선
- 연평균 수출 12% 성장(2015년 10.8백억 불 규모)
- 연평균 수입 10.5% 성장(2015년 12.2백억 불 규모)
-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독려, 원유수출 자제(Dung Quat 정유공장 활용 극대화)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양자, 다자간 FTA 체결 확대
- 수출용 제품을 위한 원자재 공급센터 건설
- 수입제품 국산화, 국산제품 활용 독려

- 기업

- 안정적인 거시정책 운용으로 친기업 환경 조성
- 등록기업 수 2006-2010년 대비 2배 증가
- 법규정 간소화로 사업장벽 해소
- 국유기업 거시경제 주요 Driving force로 육성
- 민간기업 R&D, 투자장려
- 중소기업 투자지원

○ 기타 주요 경제 정책

- 국영기업 개혁

- 최초의 국영기업 개혁은 1989-92년 기간 실시되어 동 기간 중 국영기업의 수는 12,000개에서 약 6,000개로 줄어들었으나, 생산 효율성 제고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개혁은 미추진
-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에 공식 착수한 1992년 이후 2000년까지 약500개의 국영기업만이 구조조정을 거쳐, 주식화(민영화), 인수·합병, 청산 또는파산
- 2001년 이후 정부주도로 국영기업 개혁, 특히 주식화(민영화)를 강력 추진하기 위해 총리직속의‘국영기업개혁 및 발전위원회’를 설치, 2001-2005년간 총 5,655개의 국영기업 중 3,349개의 기업이 구조조정되었으며 이중 2,188개기업이 주식화(민영화), 252개 기업이 청산, 416개 기업이 합병
- 2008년까지 총 3,781개의 국영기업이 민영화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950개 국영기업의 민영화 계획이 있으며, 2008년 상반기까지 115개만 완료
- 2011년 9월 말 기준 국영기업 1,309개가 활동



-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 개혁을 위해 민영화 또는 청산, 인수·합병, 국영기업 구조 조정에 따른 해고 노동자 대책 수립 등을 통해 국영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토대 제약 요인 - 토지사용권 평가 등, 세계 경제위기 - 전략적 외국인 투자자 부족, 급속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융정책의 한계 등으로 인해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속도는 매우 느린 편
 - 더욱이 2010년 말 벌어진 Vinashin 사태는 베트남의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함께 국영기업 개혁 정책의 한계점을 대외적으로 노출하는 계기
 - 현재까지 베트남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대부분의 경제 부문을 이끌어가고 있는 국가기관의 비효율적인 행태는 베트남 경제 전반에 큰 부담
 - 2012년말 현재 베트남 국영기업의 총 부채는 64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 2013년까지 국영기업 개혁을 로드맵 발간을 약속
- 금융개혁
- 2012년12월 베트남 원조공여국회의(Consultative Group Meeting)에서 세계은행은 베트남 정부에 금융권 부실채권이 베트남 성장의 저해 요소라고 지적하고 시급한 해결을 촉구
 - 베트남 중앙은행은 2012년말 기준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을 약 8.75% 수준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2013년에 상업은행들이 부실채권 감소를 위해 대출을 제한할 경우 시중의 신용경색 현상은 지속될 예정
- 무역자유화
- 베트남은 1995년 AFTA 가입, 2001년 12월 베트남·미국 무역협정 발효 및 1995년-2006년간 WTO 가입 추진 등 일련의 무역자유화 정책을 통한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추구하면서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서비스 분야 개방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관련된 법령 정비를 진행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WTO 가입 추진과정에서 베트남은 WTO 가입 후 5년 내에 수입 관세를 평균 17.4%에서 14%로 내리고(농산물은 31.6%에서 21%로, 공산품은 36.5%에서 12.6%), 110개의 서비스 품목을 향후 1년 내지 7년에 걸쳐 개방하고, WTO에서 금하는 농산물 및 공산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철폐기로 약속
- 통화정책
 - 2008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경제성장률 6.23%보다 훨씬 높은 22.97%를 기록한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중앙은행은 2005년말 부터 유지해왔던 8.25%의 대출이자 기준율을 2008년 6월에 전격적으로 14%로 상향 조정
 - 2008년 후반부터 국제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속도로 국내경기가 침체되자,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율을 7%까지 단계적으로 조정
 - 2009년 경기부양정책으로 기업들의 생산 및 경영목적 대출금에 대해 4%의 이자보조금 지급(2009년 말까지 총 220억 불이 이자보조금 혜택 하에 대출된 것으로 집계)
 - 베트남 은행분야 발전 로드맵에 따르면, 2006-2010년에 ① 인플레이션율은 경제성장률 이하, ② 대출율 매년 평균 18-20%, ③ 2010년까지 부실채권비율은 5% 이하로 유지 등을 목표로 설정
- 환율정책
 - 베트남은 1999년 2월 이래 하루 최대 환율변동폭을 전일 은행간 거래 환율의 일정 범위내에서만 인정하는 점진적 연동환율제를 도입, 자국 통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따른 경제불안정을 최소화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점진적인 평가절하를 통한 대외경제력 유지 및 수출증대를 위해 노력
 - 1997 - 98년간에는 베트남 동화(VND)의 대 달러화 환율이 10-13% 절하
 - 2007년도에는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로 베트남 동화가 매우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냈으나 외국인투자와 ODA



유입과 정부의 강력한 통화정책으로 베트남 동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를 방지

- 현재의 환율제도는 관리변동환율제라고 칭할 수 있는데, 중앙은행이 환율을 지속적으로 관리

□ 베트남 주요산업

○ 주요 산업 현황

- 전력 산업

<베트남 전원구성 기본계획>

	2015		2020		2025		2030	
	MW	Share	MW	Share	MW	Share	MW	Share
수력·양수	14.200	33.6%	17.300	26.5%	19.800	20.9%	21.000	15.5%
석유/가스화력	10.500	24.9%	12.800	19.7%	16.700	17.6%	17.500	12.9%
석탄화력	14.900	35.1%	29.200	44.7%	42.900	45.2%	75.300	55.5%
수 입	1.070	2.5%	1.800	2.8%	4.600	4.8%	6.300	4.7%
신 재 생	1.670	3.9%	3.100	4.8%	4.800	5.1%	4.800	3.6%
원 자 력		0.0%	1.000	1.5%	6.000	6.3%	10.700	7.9%
총설비용량	42.500		75.000		95.000		146.800	
Pmax	30.800		52.000		77.000		110.000	
생산전력량 (10억kWh)	194.3		329.4		489.6		695.1	

♣ 출처 : 베트남 통계청

- 베트남의 전력생산은 수력과 화력발전소에서 대부분 생산되며, 화력발전소 중 천연가스발전소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적
- 베트남의 경제발전에 따라 전력 수요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력 수요에 대응코자 베트남 정부는 원전 신규 도입 및 석탄화력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원구성기본계획 발표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2030년까지를 검토대상으로 하는 2011-2020년간 국가전원개발계획에는 신재생, 수력, 화력(석탄, 천연가스, 석유, LNG), 원자력 등 연료에 따른 발전원별 설비 확충 목표 명시
- 2020년 총 설비용량을 약75,000MW로 계획

<연도별 송전망 증설 계획>

구 분	단위	2011-2015	2016-2020	2021-2025	2026-2030
500kV 변 전 소	MVA	17,100	26,750	24,400	20,400
220kV 변 전 소	MVA	35,863	39,063	42,775	53,250
500kV 송전선로	km	3,833	4,539	2,234	2,724
220kV 송전선로	km	10,637	5,305	5,552	5,020

♣ 출처 : 베트남 통계청

- 전력망은 500kV급을 베트남의 초고압송전의 주요 전압으로 명시하고, 750kV급 및 1,000kV급 송전에 대한 연구 계획 언급
- 베트남의 대표적 발전 및 송배전 사업자는 EVN(베트남 전력공사)이며, 이외 PVN(석유공사), VINACOMIN(석탄광물공사) 등 베트남 국영기업과 외국투자자들도 발전 사업에 참여중
- 석유화학산업
 - 베트남은 산유국이지만 정유시설 부족으로 원유를 수출하고 석유 제품을 수입하는 산업형태 지속
 - 2012년 기준, 연료 및 석유제품 103억 7879만 달러 수입
 - 우리나라도 2012년에 10억 2540만 달러 규모를 수출하여 9.9%의 시장점유율차지
- 철강산업
 - 베트남의 철강수요는 건설 및 산업발전에 따라 지속 증가
 - 2012년 철강, 제품 수입은 83억 9,615만 달러



- 한국은 16억 6690만 달러 수출로 19.9% 시장점유율 차지
 - 베트남에는 약 64개의 주요 철강기업이 활동 중이나, 대부분 연간 생산량 50만 톤을 초과하지 못하는 중소형 기업
 - 우리나라의 포스코도 베트남에 3개의 철강 공장을 운영중
 - WTO와 AFTA의 관세 혜택일정에 따른, 수입 제품 유입 도 베트남 국내 철강시장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 2013년 현재 베트남의 철강 생산량은 약 550만 톤이며, 수입 720만 톤, 수출 120만 톤, 총수요는 약 1100만 톤 수준
- IT산업
- 베트남 IT시장은 2012년 23.5억불로 전년대비 19.2%가 성장하였으며, 2013년에도 20%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베트남 정부에서 해외원조사업과 연계한 공공 IT프로젝트를 지속 발주하는 것이 시장성장의 발판
 - 베트남 정부는 우리나라 모델에 따라 2007년 정보통신부를 설치하였으며, 총리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우리나라 IT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
 -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활발한 투자와 활동에 힘입어 베트남 내에서 한국IT기업의 위상은 매우 높은 편
- 건설산업
- 2012년 건설시장 규모는 86억 달러로 2011년 대비 2% 성장하였으나, 최근 베트남 정부의 긴축정책, 비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프로젝트의 건설지연 등으로 베트남 건설산업은 다소 위축
 - 이러한 베트남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건설장비 수입은 2011년 대비 수량과 금액에서 각각 28.39%, 38.85% 감소
 - 베트남 정부의 정책방안, 소비자의 수요 증가, 국내외 경기회복 시기 등의 요인에 따라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 산업인프라

○ 도로

- 베트남의 도로망은 전국에 걸쳐 비교적 조밀하게 개설되어 있으나 대부분 좁고포장 상태가 불량
 - 2008년말 기준 도로 총 연장은 160,089km로서 국가(13,554km), 광역지자체(province, 31,575km), 하위 지자체(districts, 114,960km)가 각각 관리
 - 2004년 10월 고속도로공사(Vietnam Expressway Corporation, VEC)를 설립 및 2008년 12월 중장기 고속도로망 계획 수립 등 고속도로 건설을 야심차게 추진 중

○ 철도

- 운행 중인 철도는 총 2,600km으로, 6개 주요 노선과 기타 간선
- 모든 노선이 단선이며, 협궤 84%, 국제표준궤 7%, 표준궤와 협궤 병용 구간이 9%
- 기관차 및 차량, 철도교량을 포함한 철도시설이 노후된 상태로, 하노이-호치민간 철도의 평균 주행속도는 60km/h
- 베트남 정부는 기존 노선을 개량하여 평균 주행속도를 90km/h로 향상시키고, 항만이나 주요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노선을 건설할 계획
- 2020년까지는 기존 노선의 개량을 완료하는 한편, 주요 간선 노선을 복선화하고, 특히 하노이-호치민간 복선 고속철도(표준궤)를 건설할 계획
- 하노이시(5개 노선)와 호치민시(6개 노선)에서는 외국 ODA지원으로 도시전철 건설 추진 중

○ 항만

- 전국에 걸쳐 총 114개의 항만이 있으나, 주요 항만으로는 북부의 하이퐁항, 중부의 다낭항, 남부의 사이공항이 있으며, 총 교역량의 80% 이상을 하이퐁항과 사이공항에서 처리
- 항만개발의 목표는 아래와 같이 총 8개의 복합항만 단지를 완성하는 것



○ 공항

- 국제공항은 노이바이(Noi Bai, 하노이), 편선니엣(Tan Son Nhat, 호치민), 다낭등 3개이고, 국내선은 19개
- 하이퐁시의 깃비(Cat Bi) 공항에서는 제한적으로 국제공항 기능을 수행
- 베트남 정부는 2007년 호치민 편선니엣 공항 내 여객터미널을 추가로 신축하였고,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의 여객터미널 신축, 호치민시 제2국제공항 신설 등을 추진 중

○ 상하수도

- 기존 하천을 이용한 총연장 41,000km의 급수원이 있으나, 전체 인구의 47%(도시 약 60%, 농촌 35%)만이 상수관으로 생활용수를 공급(2007년 기준)
- 전국적으로 약 170개의 정수장이 있으나, 대부분 도시지역에 집중
- 하노이와 호치민시의 상수도(급수) 비율은 60-70%이나, 중소도시의 경우 30~40% 수준에 불과
- 도시화 및 공업화에 따른 수질오염이 심각하며, 2007년 기준 도시 내 하수처리율이 10%에 불과
- 베트남 정부는 시급한 급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WB, ADB, JBIC 등 ODA 자금을 지원받아 취수장, 정수장, 상하수도 관로 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STT No.	Nội dung Description	Doanh thu, thu nhập Revenue, Income				Chi phí Expense				Lợi nhuận tăng do xác định lại theo giá thị trường Increase of profit from reassessment based on market price
		Giá trị ghi nhận theo số sách kế toán Amount recorded in accounting books	Giá trị xác định lại theo giá thị trường Reassessed amount based on market price	Chênh lệch Difference	Phương pháp xác định giá Transfer pricing method	Giá trị ghi nhận theo số sách kế toán Amount recorded in accounting books	Giá trị xác định lại theo giá thị trường Reassessed amount based on market price	Chênh lệch Difference	Phương pháp xác định giá Transfer pricing method	
(1)	(2)	(3)	(4)	(5)=(4)-(3)	(6)	(7)	(8)	(9)=(7)-(8)	(10)	(11)=(5)+(9)
1.2	Hàng hoá không hình thành TSCĐ Products, goods which do not become fixed assets									
a	Công ty liên kết A Related party A									
b	Công ty liên kết B Related party B									
...										
2	Dịch vụ Services									
2.1	Nghiên cứu, phát triển Research, development									
a	Công ty liên kết A Related party A									
b	Công ty liên kết B Related party B									
...										
2.2	Quảng cáo, tiếp thị Advertisement, Marketing									
a	Công ty liên kết A Related party A									
b	Công ty liên kết B Related party B									
...										
2.3	Quản lý kinh doanh và tư vấn, đào tạo Business management, consultancy and training									
a	Công ty liên kết A Related party A									
b	Công ty liên kết B Related party B									
...										
2.4	Hoạt động tài chính Financial Activities									
2.4.1	Tiền bản quyền và các khoản tương tự Royalties and similar items									
a	Công ty liên kết A Related party A									
b	Công ty liên kết B Related party B									
...										
2.4.2	Lãi vay Interest expenses, loan interest									
A	Công ty liên kết A Related party A									
B	Công ty liên kết B Related party B									
...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STT <i>No.</i>	Nội dung <i>Description</i>	Doanh thu, thu nhập <i>Revenue, Income</i>				Chi phí <i>Expense</i>				Lợi nhuận tăng do xác định lại theo giá thị trường <i>Increase of profit from reassessment based on market price</i>
		Giá trị ghi nhận theo sổ sách kế toán <i>Amount recorded in accounting books</i>	Giá trị xác định lại theo giá thị trường <i>Reassessed amount based on market price</i>	Chênh lệch <i>Difference</i>	Phương pháp xác định giá <i>Transfer pricing method</i>	Giá trị ghi nhận theo sổ sách kế toán <i>Amount recorded in accounting books</i>	Giá trị xác định lại theo giá thị trường <i>Reassessed amount based on market price</i>	Chênh lệch <i>Difference</i>	Phương pháp xác định giá <i>Transfer pricing method</i>	
(1)	(2)	(3)	(4)	(5)=(4)-(3)	(6)	(7)	(8)	(9)=(7)-(8)	(10)	(11)=(5)+(9)
2.5	Dịch vụ khác <i>Other services</i>									
A	Công ty liên kết A <i>Related party A</i>									
B	Công ty liên kết B <i>Related party B</i>									
...										

Tôi cam đoan số liệu kê khai trên là đúng và tự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pháp luật về số liệu đã khai.
We guarantee that the above figures are accurate, full and clear and shall entirely be responsible before the law for the declared figures./

Ngày..... tháng..... Năm 201...
, 201...

NHÂN VIÊN ĐẠI LÝ THUẾ / TAX AGENT

Họ và tên:.....
Full name
 Chứng chỉ hành nghề số:.....
Practising Certificate No.

**NGƯỜI NỘP THUẾ hoặc / TAXPAYER or
 ĐẠI DIỆN HỢP PHÁP CỦA NGƯỜI NỘP THUẾ
 LEGAL REPRESENTATIVE OF TAXPAYER**

Ký, ghi rõ họ tên; chức vụ và đóng dấu
Sign with full name and position, and seal

Ghi chú:
Note:

- Đề nghị doanh nghiệp đọc kỹ Hướng dẫn kê khai thông tin về giao dịch liên kết để xác định đủ và chính xác các thông tin ghi vào tờ khai này;
- It is proposed that the business establishment read carefully the guidance on declaration of the information on associate transaction to determine fully and accurately the figures to be recorded in this declaration.
- Những cột chỉ tiêu nào không có thông tin thì bỏ trống.
- Any item that has no data shall be left blank.



3

베트남 주요 웹사이트



□ 대사관

-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 : [vnm-hanoi,mofa.go.kr](http://vnm-hanoi.mofa.go.kr)
- 주대한민국 베트남 대사관 : www.vietnamembassy-seoul.org

□ 정치

- 총리실 : chinhphu.vn
- 공산당 : www.na.gov.vn
- 인민군대 : www.qdnd.vn
- 인민공안 : www.cand.com.vn

□ 경제

- 국세청 : www.gdt.gov.vn
- 베트남 국가은행 : www.sbv.gov.vn
- 무역촉진국 : www.viettrade.gov.vn
- 기업개발국 : www.business.gov.vn
- 베트남 산업인력관리공단 : www.vcci.com.vn
- 호치민시 무역·투자 촉진센터 : [www,itpc.hochiminhcity.gov.vn](http://www.itpc.hochiminhcity.gov.vn)
- 베트남 사회정책은행 : www.vbsp.org.vn
- 베트남 개발은행 : www.vdb.gov.vn
- 중앙인민신용기금 : www.ccf.vn
- 통계총국 : www.gso.gov.vn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교육

- 베트남 사회과학원 : www.vass.gov.vn
- 베트남 과학기술원 : www.vast.ac.vn
- 중앙경제관리원 : www.ciem.org.vn
- 국가 원자력에너지원 : www.vaec.gov.vn
- 공업부 - 기계 연구원 : www.narime.gov.vn
- 과학기술정보국 : www.vista.gov.vn
- 하노이 국립 대학교 : www.vnu.edu.vn
- 호치민 국립 대학교 : www.vnuhcm.edu.vn

□ 사회/문화/언론

- 문화체육관광부 : www.cinet.gov.vn
- 베트남 관광청 : www.vietnamtourism.com
- 베트남 역사 박물관 : www.baotanglichsu.vn
- 베트남 호치민 박물관 : www.baotanghochiminh.vn
- 베트남 민족학 박물관 : www.vme.org.vn
- 호치민 묘소 : www.bqlang.gov.vn
- 베트남 군사역사 박물관 : www.btlsqsvn.org.vn
- 베트남 여성연맹 : hoilhpn.org.vn
- 베트남 학생회 : hsvvn.vn
- 베트남 노동연맹 : www.congdoanvn.org.vn
- 베트남 농민회 : www.hoinongdan.org.vn
- 베트남 변호사연맹 : liendoanluatsu.org.vn
- 베트남 방송국 : vtv.vn
- 베트남 라디오방송국 : vov.vn
- 베트남 통신사 : news.vnnet.vn
- 인민일보 : www.nhandan.com.vn



- 노동신문 : laodong.com.vn
- 선봉신문 : www.tienphong.vn
- 젊은이신문 : tuoitre.vn
- 청년신문 : www.thanhnien.com.vn
- 베트남뉴스(영자) : vietnamnews.vn

□ 한인소식

- 재하노이한인회 : homepy.korean.net/~vietnamhanoi/www
- 재호치민한인회 : koreanhcm.org



1. 베트남 국세청(www.gdt.gov.vn)
2. Allens Linklaters, 『Legal Guide investment in Vn』, Allens Linklaters, 2012
3. Deloitte, 『Vietnam Highligt 2014』, Deloitte, 2014
4. EY, 『2013 Transfer pricing in VN』, EY, 2013
5. E&Y, 『Kocham Tax Seminar』, E&Y, 2013
6. HSBC, 『Worldwide pesonal tax guide 2014』, HSBC, 2014
7. KPMG, 『Transfer pricing in VN』, KPMG, 2013
8. KPMG, 『Transfer pricing in VN』, KPMG, 2013
9. KPMG, 『Transfer pricing in VN』, KPMG, 2013
10. KPMG, 『Corporate tax changes, new tax rates』, KPMG, 2013
11. KPMG, 『Vietnam Tax profile』, KPMG, 2013
12. KPMG, 『Global Transfer pricing Review』, KPMG, 2013
13. KPMG, 『Transfer pricing Alert』, KPMG, 2014
14. PWC, 『Vietnam newsbriefs』, PWC, 2013
15. PWC, 『Doing Business in Vietnam』, PWC, 2011 2014
16. Thomas Maclelland, 『2014 Global TP guide』, 딜로이트, 2014
17. Dr. Lenet, 『Global Transfer pricing Review』, KPMG, 2013ta 201
18. Quantera global, 『Transfer pricing in VN』, Quantera global, 2014
19.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 『베트남 개황 2013』, 외교부, 2013
20. 법무법인 율촌, 『베트남 투자』, 율촌, 2013
21. 법무법인 율촌, 『외국인계약자세의 이해』, 율촌, 2011
22. 코트라하노이, 『베트남법인설립절차 안내』, 코트라, 2012
23. 엄진용, 『주요세무사례분석』, 이정회계법인, 2013
24. 산업통상부, 『베트남투자뉴스』, 산업통상부, 2013~2014



25. 변동욱 영사,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제 안내』, 주호치민총영사관, 2013
26. 조성룡, 『베트남조세뉴스』, 호치민한인회, 2014
27. 정상준, 『베트남 투자환경』, 딜로이트, 2014
28. 매일경제신문, 『동남아 국가 이전기격과세에 현지업체 비명』, 2014
29. 정일회계법인, 『베트남 회계와 세무』, 정일회계법인, 2014





본 안내서는 우리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베트남 세법 등 2014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베트남 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조문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 : 044-204-2838

팩스 : 044-216-6066

원고 작성 및 편집

행정사무관 곽 정 안

국제조사관 이 승 현

국제조사관 조 영 규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 담당관실(044-204-2838)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